

# 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

김병준\*\*

**초록** 진한 시기령은 '지금' 황제의 '옳은'(是) 명령으로서 율에 우선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령은 법전으로 성립되지 못한 채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실무 관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령의 반포와 그 변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본고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출토 간독자료를 이용해 진한시기령이 반포되어 지방 행정단위에 하달된 뒤, 어떻게 정리되어 관리들이 활용하였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진한시기 황제의 명령은령으로 제정된 후 실무 기관으로 전달되어 기존 율에 우선하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령을 하달받은 실무 관서에서는령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조령의 형식적 요소는 최대한 생략했다. 또 유사한 구문을 포함하는령문은 '급'(及)자를 이용하여 결합했다. 생략과 결합을 거친 뒤에는 편의적인 실제 활용을 위해령문을 분류하고령집으로 편찬해야 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각 관서의 업무 필요라는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비 과정은 임의적이었고 분류 주체와 기준도 다양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으로 하달한 체계적 법전이 아니었고,령을 하달 받은 하급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의령을 수령해야 해서 실질적인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현에서는 다시금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를 발췌하여 사용했다. 현재 간독에서 보는령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주제어** 진한, 율,령, 간독, 조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0448A-20230018).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교수

## 1. 머리말

『사기』 흑리열전에는 진한시대 율령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일화가 전한다. 어느 객이 두주(杜周)에게 “어찌 삼척법(三尺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결옥을 하느냐”고 비난하자, 두주는 “삼척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앞선 주군이 옳다고 한 것을 기록한(著) 것이 옳이고, 지금의 주군이 옳다고 한 것을 끼워 넣은(疏) 것이 령이다. 지금의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했다.<sup>1</sup> ‘삼척법’이라 불리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의 황제가 내린 새로운 명령이 새로운 령으로 제정되어 앞선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율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황제의 명령이 기존의 율령에 우선한다면, 제국의 행정 전선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관원들은 그 새로운 령에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율령을 바탕으로 직접 행정과 사법을 담당해야 했던 관리들은 그 변화를 일일이 파악하느라 무척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중앙정부 측에서 새롭게 정해진 령을 기존 율령과 조화롭게 잘 정비해서 통일된 법전을 지방으로 하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진한 시기의 율령이 과연 법전으로 성립되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 왔다.<sup>2</sup>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는 남북조 시기 이후가 돼야 형벌을 다루는 법전을 율(律), 비형벌을 다루는 법전을 령(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보다 시기가 앞선 진한시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진한 율령의 법전 여부 논의는 수호지진묘 출토 율령 이래 최근 장가산336호묘 및 호가초장(胡家草場) 출토

1 『史記』 卷122 「酷吏列傳」, “客有讓周曰: 「君爲天子決平, 不循三尺法, 專以人主意指爲獄. 獄者固如是乎?」周曰: 「三尺安出哉?前主所是著爲律, 後主所是疏爲令, 當時爲是, 何古之法乎!」.”

2 이와 관련한 연구사는 廣瀨薰雄(2010), 『秦漢律令研究』, 東京: 汲古書院, pp. 77~80; 陳偉(2021), 방윤미 역, 『秦漢 簡牘에 보이는 律典 체계』, 『동아문화』 58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율(漢律)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율령 간독이 발표되면서 매우 활발해졌다. 진한시기 율과 관련해서는 율이 정률(正律, 獄律)과 사율(事律)로 구분되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반면 법전으로서의 성립 여부는 논쟁 중이다.<sup>3</sup> 하지만 적어도 령은 하나의 통일된 법전이 아닌 단행령이었음이 분명해졌다.<sup>4</sup> 율에 우선하는 ‘지금’ 황제의 ‘옳은’(是) 명령인 령이 법전으로 성립되지 못했다면 실무 관원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령의 반포와 그 변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실제로 출토 간독에서 확인되는 진한시기 령은 법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령문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수호지진간이나 이년율령은 주로 율문이라서 상대적으로 정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악록진간 이후 공표된 령은 그 내용이 매우 번잡스럽다. 조서의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일된 격식을 찾을 수 없고, 하나의 조문 안에 상이한 시기에 반포된 내용이 섞여 나오기도 하며, 령이 모여진 령집도 규칙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명칭을 갖고 있었다. 령이 중앙에서 정비되어 일사불란하게 하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령이 단일한 법전으로 성립하지 못했던 단계를 확증해 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간독에 보이는 비체계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을까? 중앙에서 정비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단계에서 왜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했을까?

실무 관원에게 매우 중요한 황제의 명령이 이렇게 비체계적인 령으로

3 방윤미(2021), 「〈陳偉, 秦漢 簡牘에 보이는 律典 체계〉 해제, 『동아문화』 58.

4 富谷至(2000), 「晉秦始律令への道: 第一部 秦漢の律と令, 『東方學報』 72; 廣瀬薫雄(2010); 張忠煒(2012), 『秦漢律令法系研究初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등. 임중혁(2021c), 「漢令의 편제와 종류,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경인문화사, p. 318은 胡家草場 율령의 令散甲을 흠어진 령을 묶었던 것같이 보이므로 이를 ‘令典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취합을 법전으로 가는 경향이라고 본 것 같으나, 법전과 법령의 단순 취합은 동일하지 않은 개념이다. 令甲·令乙 등이 법전이 아닌 것처럼 令散甲도 법전으로 보기 힘들다.

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진한시기 율령과 그 집행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토 간독 자료를 이용해 황제의 명령이 어떻게 령으로 제정되는지, 그러한 령이 지방 행정단위에 하달된 이후 어떻게 정비되는지, 령이 축적되면서 어떻게 령집으로 편찬되는지 등 령의 제정과 정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된 령을 실무 관원이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령의 구조

### 2.1. 조서의 구조

진한시대에는 이러한 조서가 령으로 만들어졌다. 진시황은 즉위 26년에 6국을 병합한 이후 황제와 같은 새로운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명(命)을 제(制)로 바꾸고, 령(令)을 조(詔)로 바꾸라.”라는 부분이 있었다.<sup>5</sup> 그 이전에 명령(命令)이라고 했던 것을 제조(制詔)로 개칭했다는 것이지만, 이 규정은 곧 황제의 명령이 곧 제서왈(制書曰), 조왈(詔曰) 등으로 표현된 조서로 반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이전에는 황제의 명령이 령으로 전달되었다면 이제는 황제의 명령이 조서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사기』 「삼왕세가」(三王世家)는 이러한 조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준다.<sup>6</sup>

(1) ① 「大司馬臣去病昧死再拜上疏皇帝陛下：… 臣竊不勝犬馬心，昧死願陛

5 『史記』卷6「秦始皇本紀」“命爲制，令爲詔。”

6 大庭脩(1982), 「史記三王世家と漢の公文書」, 大庭脩, 『秦漢法制史の研究』, 創文社, pp. 285~307.

下詔有司, 因盛夏吉時定皇子位. 唯陛下幸察. 臣去病昧死再拜以聞皇帝陛下。」

- ② 三月乙亥, 御史臣光守尚書令奏未央宮. 制曰: 「下御史。」
- ③ 六年三月戊申朔, 乙亥, 御史臣光守尚書令、丞非, 下御史。
- ④ 書到, 言: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太常臣充、大行令臣息、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上言: 大司馬去病上疏曰: … 臣竊不勝犬馬心, 昧死願陛下詔有司, 因盛夏吉時定皇子位. 唯願陛下幸察. 制曰『下御史』. 臣謹與中二千石、二千石臣賀等議: … 方今盛夏吉時, 臣青翟、臣湯等昧死請立皇子臣闕、臣旦、臣胥爲諸侯王. 昧死請所立國名。」
- ⑤ 制曰: 「… 其更議以列侯家之。」
- ⑥ 三月丙子, 奏未央宮.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臣謹與列侯臣嬰齊、中二千石二千石臣賀、諫大夫博士臣安等議曰: … 臣請立臣闕、臣旦、臣胥爲諸侯王.」三月丙子, 奏未央宮.
- ⑦ 制曰: 「… 所以抑未成, 家以列侯可。」
- ⑧ 四月戊寅, 奏未央宮.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臣青翟等與列侯、吏二千石、諫大夫、博士臣慶等議: 昧死奏請立皇子爲諸侯王. 制曰: … 臣青翟、臣湯、博士臣將行等伏聞 … 臣請立臣闕、臣旦、臣胥爲諸侯王.」
- ⑨ 四月癸未, 奏未央宮, 留中不下.
- ⑩ 「丞相臣青翟、太仆臣賀、行御史大夫事太常臣充、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言: 臣青翟等前奏大司馬臣去病上疏言, 皇子未有號位, 臣謹與御史大夫臣湯、中二千石、二千石、諫大夫、博士臣慶等昧死請立皇子臣闕等爲諸侯王. … 陛下固辭弗許, 家皇子爲列侯. 臣青翟等竊與列侯臣壽成等二十七人議, 皆曰以爲尊卑失序. 高皇帝建天下, 爲漢太祖, 王子孫, 廣支輔. 先帝法則弗改, 所以宣至尊也. 臣請令史官擇吉日, 具禮儀上, 御史奏輿地圖, 他皆如前故事.」制曰: 「可。」

여기에는 무제의 아들을 제후왕으로 봉해 달라는 주청과 이를 사양하는 무제 사이에 오간 문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① 원수(元狩) 6년 3월 28일 대사마 곽거병의 주청을 미양궁에 주청하자, ② 당일 무제는 이를 어사에게 논의하도록 했다(‘制曰, 下御史’). ③ 그러자 다음날 3월 29일 상서령이 이를 어사에게 전달하면서 이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④ 황제의 명령에 따라 승상과 어사대부는 태상과 대행령, 종정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상주를 올리는데, 이때 대사마 곽거병의 주청과(‘大司馬去病上疏曰’) 이를 어사에게 논하도록 한 황제의 명령을(‘制曰, 下御史’) 다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중이천석관(中二千石官) 및 이천석관(二千石官)과 함께 논의한(‘議’) 내용을 서술한 뒤, 마지막에 이를 청원하였다(‘請’). ⑤ 그렇지만 황제는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명령했다(‘制曰, … 更議’). ⑥ 4월 1일 승상과 어사대부가 이번에는 열후와 이천석, 간대부 등과 논의한(‘議’) 내용을 청원했지만 ⑦ 황제는 역시 이와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制曰’). ⑧ 이렇게 무제가 이를 거부하자 4월 6일에 다시 승상과 어사대부가 상소하는데, 이전에 수령했던 조서와 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주청이라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⑨ 무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나기도 했지만(‘留中不下’), ⑩ 다시 승상과 어사대부, 종정 등이 상소를 올려, 지난번에 자신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과 이를 황제가 사양했던 사실, 그리고 다시 열후 등 27명이 함께 다시 논의한(‘議’) 내용과 태자의 책봉을 청원하였다. 그러자 무제가 결국 이를 허락했다(‘制曰可’).

「삼왕세가」의 기록은 관원 혹은 백성이 올린 상주에서 시작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얻어 시행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경대신의 상소와 이에 대한 황제의 명령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소문에는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와 그로 말미암아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입하고 나서 이에 대한 유관 담당자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근거한 자신들의 청원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 황제는 언제든지 신하들의 청원에 대해 ‘제왈’(制曰)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

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조서에 모두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오바 오사무(大庭脩)는 일찍이 한대 조서를 3가지 형식으로 분류했다. 제1형식은 황제가 스스로의 의지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이고, 제2형식은 관료가 위임된 권한 내에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의한 것을 황제가 인가하고 이를 황제의 명령으로 공포하는 경우, 제3형식은 이 두 가지 형식을 병용한 것인데, 황제 스스로의 의지로 일부 관료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듣거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세한 입법을 관료에게 위임하고 이를 황제가 인가하여 황제의 명령으로 공포하는 경우다.<sup>7</sup>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러한 분류가 오히려 조서의 형식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바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분류는 문서의 표현에 근거한 원론적 분류이지 실제 조서가 반포되는 배경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 생략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러한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야말로 형식을 세분하기보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전형적 형식을 설정하는 것이 조서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오바는 제1형식을 황제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형식은 관료가 발의했던 것이라고 구분하지만, 필자는 이 두 가지 모두 황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3형식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문제 13년 형벌 개혁 조서를 보자.

- (2) ① 其少女緹縈，自傷悲泣，乃隨其父至長安，上書曰：… 書奏天子，天子憐悲其意，②遂下令曰：「制詔御史：… 夫刑至斷支體，刻肌膚，終身

7 大庭脩(1982), 「漢代制詔の形態」, 大庭脩, 『秦漢法制史研究』, 創文社, pp. 201-235.

不息, 何其刑之痛而不德也! 豈稱爲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 有以易之. … 具爲令。」<sup>③</sup> 丞相張蒼、御史大夫馮敬奏言: 「… 陛下下明詔, … 臣謹 ④ 議請定律曰: ④ 諸當完者, 完爲城旦舂; 當黥者, 髡鉗爲城旦舂; … 已論命復有笞罪者, 皆棄市. … 前令之刑城旦舂歲而非禁錮者, 如完爲城旦舂歲數以免, 臣昧死請.」<sup>⑤</sup> 制曰: 「可.」<sup>8</sup>

이 조서에는 ① 문제가 순우공의 딸 제영(緹縈)의 상서(上書)를 보고 ② ‘제조어사’하기를 육형 폐지 관련 령(令)을 만들라고(‘具爲令’) 명령했고, ③ 이에 승상과 어사가 황제의 조서를(‘下明詔’) 받들어 이에 대해 논의한(‘議’) 결과 ④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정비하기를(‘定律’) 청하고(‘請’), ⑤ 황제가 이를 재가하는(‘制曰可’)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의 내용을 주목하면 조서는 제1형식에 가깝지만, ②에 포함되어 있는 황제의 뜻, 즉 현재의 육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백성의 부모된 자로서 이를 없애라는 내용을 주목하면 조서는 제2형식에 가깝다. 그래서 오바는 이를 제3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사기』 「유림열전」에 수록된 공손홍(公孫弘)의 공령(功令) 제정을 허락하는 조서도 마찬가지다.

(3) 「丞相御史言: ① 制曰「…」 ② 謹與太常臧、博士平等議曰: … ③ 請 … ④ 選擇其秩比二百石以上, 及吏百石通一藝以上, 補左右內史、大行卒史; … 先用誦多者, 若不足, 乃擇掌故補中二千石屬, 文學掌故補郡屬, 備具. 請著功令. 佗如律令.」 ④ 制曰: 「可.」<sup>9</sup>

승상어사가 공령 제정을 청하는(‘請’) 부분만 남았지만, 그때까지의 과정이 청원하는 상주문에 포함되어 있다. 승상어사는 자신들의 상주 속에 ①

8 『漢書』卷23 「刑法志」.

9 『史記』卷121 「儒林列傳」.



황제가 현재(賢材)를 등용하는 방식을 논의하라고 승상과 어사에게 명령했던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②태상과 박사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여(議) ③그 결과 功수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하자(請) ④황제가 이를 재가하였다(制曰可). 이 조서는 승상어사의 상주(言)로 시작되므로 형식상 제2형식에 속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황제의 견해가 담긴 제서가 인용되고 있으므로 황제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논의를 시작하는 제1형식에 다름없다. 그런데 오바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해서 제3형식으로 분류했다.

『사기』 평준서에도 유사(有司)의 주청만을 기록하면서도 주청 속에 황제의 조서를 인용하고 있다.

(4) 有司言：「① 天子曰 … ② 議令 … ③ 請 ④ 置賞官，命曰武功爵。級十七萬，凡直三十餘萬金。… 其有罪又減二等；爵得至樂卿；以顯軍功。」<sup>10</sup>

(5) 六月，詔曰：「… 其議爲令。」有司奏請置武功賞官，以寵戰士。<sup>11</sup>

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작(買爵)하여 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라는 황제의 말을 ‘제왈’(制曰)이 아니라 ‘천자왈’(天子曰)로 인용하였다. ② 그에 대해 유사가 논의한 결과를 ③ 청원(請)하였다. 이것 역시 유사의 주청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형식상 제2형식에 속하지만, 황제의 명령이 하달된 이후 논의가 시작된 것이므로 제1형식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4)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서』 무제기에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5)에서는 (4)에서 ‘천자왈’로 인용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조왈’(詔曰)의 형식으로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사가 주청한 간단한 내용이(‘有司請’) 함께 기록되어 있다.

10 『史記』卷30「平準書」.

11 『漢書』卷6「武帝紀」.

동일한 내용인데 각각 생략한 바가 달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록에 차이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 양자를 조합하면, 먼저 황제의 명령(‘制詔御史’)이 ‘조왈’(詔曰)의 형식으로 하달되었고, 명령을 받은 승상어사가 담당자인 유사에게 전달하자 유사가 이를 논의한 뒤 승상어사에게 다시 보고하였는데 이때 자신이 처음 승상어사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았던 ‘조왈’의 내용을 ‘천자왈’로 먼저 인용한 뒤 자신의 의견을 청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본래의 조문에는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상주문, 조령의 수령과 전달과 관련한 승상어사의 부분, 그리고 황제의 재가(‘制曰可’)가 모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또 유사가 황제의 명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평준서 기록인 (4)는 조령의 내용에 주목했기 때문에 유사가 주청한 내용이 길게 인용된 반면 무제기 기록인 (5)는 이러한 율령을 만들라고 했던 황제의 의도에 주목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길게 인용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4)는 제2형식에 속하는 반면, 제1형식에 속하게 되지만, 실제로 (4)와 (5)는 동일한 조서였다.

(3), (4)는 문서의 형식만 보면 제2형식에 속하지만, 실제 내용은 황제의 의지가 담긴 제1형식이므로 결국 제3형식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조서가 (4)에서는 제2형식으로, (5)에서는 제1형식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조서의 형식에 기초한 제1형식과 제2형식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는 서술하는 주체가 무엇을 생략할 것인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완전한 형태의 제1형식 혹은 제2형식을 갖춘 조서는 거의 없었을 것이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1형식과 제2형식을 별도로 구분해 내기보다 양자가 결합된 제3형식을 가장 기본적인 조령의 형식으로 설정해서 어떻게 조서가 작성되는지를 살피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1)~(5)에서 확인되는 조서의 작성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서의 작성 과정

단계	내용	표현
I	중앙과 지방의 관리 및 백성의 상주의 내용	言, 上書曰
II	상서령을 거쳐 황제에 보고되면 황제가 해당 안건을 진행하라는 명령	制詔御史, 下御史
III	황제의 명령을 받은 중앙의 담당 관원의 논의 결과 / 승상에 게 청원	議 / 請
IV	담당 관원의 보고를 받은 승상과 공경의 논의, 보완 / 황제에게 청원	議 / 請, 以聞
V	상주를 받은 황제의 의견	制書曰
VI	황제의 최종적 재가	制曰可

## 2.2. 령 속 조서의 흔적

이상 전세문헌 속에서 조서의 기본 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조서가 령으로 공포되었다. 물론 조서가 모두 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2.1.절에서 언급한 사례 중 (1)은 황자를 제후왕으로 책봉하는 조처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는 황제가 령으로 만들라고(‘具爲令’) 명령했고, (3)에서는 황제의 명령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승상이 공령(功令)에 붙여 넣을 것을 요청하자(‘請著功令’) 황제가 재가했으며, (4)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전하는 (5)에서는 황제가 이를 논의하여 령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其議爲令’). 이런 문구가 덧붙인 경우는 분명 령이 되었을 것이다.

- (6) ① 詔曰: 「… 具爲令.」 ② 有司請令縣道, ③ 年八十已上, 賜米人月一石, 肉二十斤, 酒五斗. 其九十已上, 又賜帛人二疋, 絮三斤. … 刑者及有罪耐以上, 不用此令.<sup>12</sup>

12 『漢書』卷4「文帝紀」元年3月條.

- (7) 秋七月, 詔曰: 「… 廷尉與丞相更議著令。」廷尉信謹與丞相議曰: ④ 吏及諸有秩受其官屬所監、所治、所行、所將, 其與飲食計償費, 勿論。… 無爵, 罰金二斤, 令沒入所受. 有能捕告, 畀其所受臧.<sup>13</sup>

그 밖에 전체 조서 중 일부가 생략되어 한두 단계만 남아 있는 경우도 령으로 만들어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한서』 문제기 기록인 (6)에는 ① 문제가 조서를 내린 II단계(‘詔’), ② 이에 대해 주무 관원인 유사가 구체적 조령의 내용을 청한(‘請’) III단계 부분만 남아 있다. 관원의 보고를 받아 황제에게 청원하는 IV단계, 황제의 견해 및 재가의 V단계가 생략되었을 뿐이다. 또 (7)에서도 경제가 관리의 재산 증식을 관리하라고 명령한 II단계(‘詔’), 정위와 승상이 논의하였던(‘議’) IV단계 내용만을 기록했다. 그런데 (6)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빈곤한 자들을 위해 은사를 베풀 것을 령으로 만들라고(‘具爲令’) 명령했고, (7)에서도 직접 령으로 만들라는(‘著爲令’) 언급이 있으므로 모두 령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령문(令文)은 어떠한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2), (3), (4), (6), (7)의 밑줄 친 ④ 부분이 령문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사실 기존 전세문헌 자료에 보이는 진한시기 령문은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한서』 「형법지」에 인용된 ‘이삼족령’(夷三族令)도 ‘령왈’(令曰)로 시작하여 삼족죄에 해당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내용만 간단히 규정되어 있다.<sup>14</sup> 또 출토 간독 중 주언서(奏讞書)라든가 행정문서에 인용된 령문 역시 ‘령왈’로 시작하고 처벌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었다. 가령 장가산한간 주언서에서는 “령왈, 옥사(獄史)가 어려운 재판을 잘 처리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라.”라고 되어 있고,<sup>15</sup> 리야진간에서

13 『漢書』卷5 「景帝紀」元年7月條.

14 『漢書』卷23 「刑法志」 “尚有夷三族之令. 令曰: 當三族者, 皆先黥, 劓, 斬左右止, 笞殺之, 梟其首, 蒞其骨肉於市. 其誹謗詈詛者, 又先斷舌.”

15 彭浩等主編(2008),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이하 『이년율령』으로 약

도 동정군 태수가 내려 보낸 문건 중 “령왕, 물자 수송 등 노역을 동원할 때에는 먼저 도예를 동원하도록 하고, 급한 상황이라 지체할 수 없을 경우에 만 백성의 요역을 징발하도록 하라.”라고 적혀 있다.<sup>16</sup>

그러나 령문만 모아 놓은 출토된 간독 중에는 이러한 상식과 배치되는 령문이 대부분이다. 령문에는 2장에서 살펴본 조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하 조서의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령문에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따라가면서 령문이 조서를 기초로 축약한 것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째, 지방 관리나 백성의 상주를 인용한 1단계의 표현이 남아 있는 령문의 사례다.

- (8) • 定陰忠言, 律曰:「顯大夫有臯當廢以上勿擅斷, 必請之。」今南郡司馬慶故爲冤句令, 詐課, 當廢官, 令以故秩爲新地吏四歲而勿廢, 請論慶. 制書曰:「諸當廢而爲新地吏勿廢者, 即非廢. 已後此等勿言。」• 廿六<sup>17</sup>
- (9) • 泰山守言: 新黔首不更昌等夫妻盜, 耐爲鬼薪白粲, 子當爲收, 彼有嬰兒未可事, 不能自食別傳輸之, 恐行死. 議: 令寄長其父母及親所, 勿庸別輸. 丞相議: 年未盈八歲者令寄長其父母、親所, 盈八歲輒輸之如令. 琅琊郡比. • 十三 ㉑<sup>18</sup>
- (10) 縣道官有請而當爲律令者, 各請屬所二千石官, 二千石官上相國、御史, 相國、御史案致, 當請, 請之, 毋得徑請者. 徑請者, 罰金四兩.<sup>19</sup>

칭) 『奏讞書』 안례 22 “令曰: 獄史能得微難獄, 上.” 안례 14의 “• 令曰: 諸無名數者, 皆令自占書名數. 令到縣道官盈卅日, 不自占書名數, 皆耐爲隸臣妾, 錮, 勿令以爵、償免, 舍匿者與同罪.”도 마찬가지로 사례에 해당한다.

16 陳偉 主編(2018), 何有祖·魯家亮·凡國棟 撰著, 『里耶秦簡校釋(第二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이하 『이야진간(2)』로 약칭) 簡9~2283 “令曰: 傳送委輸, 必先悉行城旦春、隸臣妾、居貲贖債, 急事不可留, 乃興徭.”

17 陳松長 主編(2017),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5)』로 약칭) 簡053~055.

18 『악록진간(5)』 簡073~075.

19 『이년율령』 『置吏律』 簡219~220.

(8)은 정음(定陰)의 충(忠)이, (9)는 태산군(泰山郡) 태수가 각각 문서를 올려 각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던 것이(‘言’) 령으로 만들어졌던 사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은 정음현의 사마(司馬)인 경(慶)의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으며, (9)는 태산군 태수가 신검수(新黔首)인 창(昌) 등의 어린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상주는 (10)의 이년율령 치리율(置吏律)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현도관에서 청원할 내용 중 율령이 되어야 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천석을 통해 상주하면, 승상어사가 이를 판단하여 황제에게 주청했던 것이다. (8)의 ‘정음’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만약 이를 정음현(定陰縣)이라고 해석하면 맨 첫 단계인 정음현에서 청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 되고, 이를 정도군(定陶郡)으로 해석하면 현도관에서 청원한 것을 이천석관이 승상어사에 상주한 다음 단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된다. 어떤 경우이든 승상어사의 심사를 거쳐 율령으로 만들 만한 청원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를 황제에게 상주하였으며, 황제는 이를 주무 담당자에게 논의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II단계).<sup>20</sup>

- (11) • 段(假)正夫言：得從人故趙將軍樂奕弟<sub>レ</sub>、舍人詔等廿四人，皆當完爲城旦，輸巴縣鹽。請：論輸詔等【廿四人，故】代、齊從人之妻子、同產、舍人及其子已傳嫁者，比故魏、荊從人。• 御史言：巴縣鹽多人，請令夫輸詔【等廿四人，故】代、齊從人之妻子、同產、舍人及其子已傳嫁不當收者，比故魏、荊從人之【妻】… 有等比。• 十五<sup>21</sup>

20 荊州博物館 編(2022),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北京: 文物出版社(이하 『장가산 336호』로 약칭) 簡086 “卅一 上林言, 東芝(滂)、西芝(滂)畜夫皆有秩節(即)缺, 內史更調它官吏補, 不習其事<sub>レ</sub>. 請得自擇除官畜夫、令史以補.”; 簡087 “卅三 北地守書言, 月氏道大抵(抵)蠻夷, 不習吏事. 請令旁縣道給令史、吏, 能自給止.”; 簡088 “卅五 淮南請: 得以漢人爲淮南吏爵大夫以上者補六百石. • 制曰: 亦通用其國人大夫以上.”; 簡095 “卅九 雲中守言: 河陰邊小民史者少, 不能自給吏<sub>レ</sub>. 請斗食、令史、佐史缺, 守調, 令旁縣補, 能自給止.” 등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21 『악록진간(5)』 簡013~018.

그런가 하면 지방의 관원이 아니라 중앙의 관리가 직접 안건을 상주한 경우도 있다. (11)는 가정(假正) 부(夫)가 옛 조나라 장군 악돌(樂突)의 동생과 사인(舍人) 등 24명이 완위성단에 처해져 과현(巴縣) 염관(鹽官)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기존의 위(魏)와 형(荊)의 종인(從人)의 예에 따르기를 청원하고 있다. (8), (9)와 마찬가지로 (11)도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이를 청원하고 있으므로 I단계에 해당하는 주청이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8), (9)와 (11) 모두 I단계를 인용하였지만, 승상어사에게 올라가고 다시 심사를 거쳐 황제에게 상주되어 황제가 이를 논의하도록 명령하는 II단계는 생략되었다. 한편 (8)에 기록된 논의(議)는 유사의 논의(III단계)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 승상어사의 논의인지(IV단계) 알 수 없지만, 황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덧붙인(‘制書曰’) 과정(V단계)을 거쳤다. (9)는 두 개의 논의(議)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앞쪽의 논의는 III단계인 유사의 논의이며, 뒤쪽의 논의는 IV단계인 승상의 논의(‘丞相議’)를 거쳤다. 단지 황제의 의견이 개입된 단계(V단계)는 보이지 않는다. (11)도 앞쪽에는 유사의 논의 결과인 청원이 기록되었고(III단계), 그에 이어 어사의 논의와 청원이 기록되었다(IV단계). 역시 황제가 의견을 덧붙이는 V단계가 생략되었다. (8), (9), (11) 모두 황제의 최종적인 재가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생략되었다(VI단계).

둘째, I단계가 생략된 채, II단계의 표현이 남아 있는 사례다.

(12) • 制詔御史：聞獄多留或至數歲不決，令無辜者久繫而有辜者久留，甚不善，其舉留獄上之。 御史請：至計，令執灑上最者，各牒書上其餘獄不決者，一牒署不決歲月日及繫者人數，爲最，偕上御史，御史奏之，其執灑不將計而郡守丞將計者，亦上之。 制曰：可。 • 卅六<sup>22</sup>

(13) • 制詔御史：聞反者子年未盈十四歲，有辜爲城旦舂者，或嬰兒也，尙抱

22 『악록진간(5)』 簡059~061.

負及纔能行，縣官即皆令衣傳城旦舂具，其勿令衣傳之。丞相御史請：諸年未盈十四歲而有臯爲城旦舂者<sup>23</sup>

- (14) • 制詔丞相斯 ㄴ : 所召博士得與議者 ㄴ , 即有逮告劾 ㄴ , 吏治者輒請之, 盡如宦顯大夫逮 ㄴ . 斯言 : 罷博士者, 請輒除其令.<sup>24</sup>

(12), (13), (14)의 령문은 모두 황제가 어사 혹은 승상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부분부터(‘制詔御史’)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고 황제가 순수히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12)와 (13)에서는 황제가 모두 특정 사항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서(‘聞’) 이를 기초로 승상과 어사에게 관련 법규를 논의하라고 했던 것이고, (14)도 황제가 소환한 박사가 고발되는 경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듣고 난 뒤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의 상주를 듣고 난(Ⅰ단계) 황제가 명령을 내렸던 것이지만(Ⅱ단계), 그 부분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12), (13), (14) 모두 황제의 명령을 받은 뒤 주무 담당자인 유사(有司)가 논의한 내용(Ⅲ단계)이 생략되었다. (12)에서는 어사의 논의를 거친 후 청원 내용이 기록되었고, (13)에서는 승상어사의 청원 내용, 그리고 (14)에서도 승상의 청원 내용이 기록되었다(Ⅳ단계). 황제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V단계는 보이지 않지만, (12)에서는 황제의 최종적 재가가 기록되었다(Ⅵ단계).

셋째는 I, Ⅱ단계가 생략된 채, Ⅲ단계부터 시작하는 사례다.

- (15) ① ·尉議 : 中縣有罪罰當戍者及陽平吏卒當戍者, 皆署琅琊郡; 屬邦、道當戍東故徼者, 署衡山郡. 它如令. 綰請許. ② 而令中縣署東海郡, 秦原署四川郡, 東郡、叁川、穎川署江湖郡 ㄴ , 南陽、河內署九江郡, 南郡、上黨、屬邦、道當戍東故徼者, 署衡山郡. 綰請許. ③ 而令郡有罪罰當

23 『악록진간(5)』 簡093~094.

24 『악록진간(5)』 簡087~088.



成者秦原署四川郡<sub>L</sub>, 東郡、叁川、潁川署江湖郡<sub>L</sub>, 南陽、河內署九江郡, 南郡、上(缺簡)者, 署衡山郡, 它如令。—<sup>25</sup>

(15)에서 위(尉)는 중앙 관부의 전문 관원에 해당한다. 그가 논의한(議) 내용은 I단계의 청원과는 달리 관중의 벌수(罰戍) 처벌을 받은 자 및 수졸을 특정 지역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은 I단계의 상주와 이를 논의하라는 II단계가 생략되고, 전문 유사의 논의와 청원이 진행되는 III단계부터 시작한령문이다.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승상 관(縮)이 상주하는 IV단계가 기록되었다. 황제의 개입과 재가가 이루어지는 V, VI단계는 생략되었다.

넷째는 I, II, III단계가 모두 생략되고 IV단계부터 시작되되, II단계의 황제 명령을 인용하고 있는 사례다.

(16) • 廿六年四月己卯丞相臣狀、臣縮受制湘山上: 自吾以天下已并, 親撫海內, 南至蒼梧, 凌涉洞庭之水<sub>L</sub>, 登湘山、屏山, 其樹木野美, 望駱翠山以南樹木<sub>L</sub>見亦美, 其皆禁勿伐. 臣狀、臣縮請: 其禁樹木盡如禁苑樹木, 而令蒼梧謹明爲駱翠山以南所封刊. 臣敢請. 制曰: 可. • 廿七<sup>26</sup>

(16)은 승상의 말로 시작한다. 즉 I, II, III단계가 모두 생략된 채 IV단계부터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6)은 II단계에 해당하는 시황제의 명령을 인용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가 논의를 하는 III단계 이전, 승상과 여사가 논의를 하는 IV단계 이전 자신들이 논의를 하게 된 근거로서 II단계에 해당하는 황제의 명령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II단계 이래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생략하였을 뿐이다. 문

25 陳松長 主編(2022), 『嶽麓書院藏秦簡(柒)』,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7)』)으로 약칭) 簡001~005.

26 『악록진간(5)』 簡056~058.

헌에서 보이는 ‘천자왈’ ‘황제왈’이라는 표현 대신에 (16)에서는 제서를 받았다고 기록했다(‘受制’).

다섯째는 I, II, III단계가 모두 생략되고 IV단계 승상어사의 논의와 청원부터 시작하는 사례다.

(17) 一、御史言，越塞闡關，論未有令。• 請闡出入塞之津關，黥爲城旦舂；  
…… 郵門亭行書者得以符出入。• 制曰：可。<sup>27</sup>

(18) • 丞相言：瑯邪縣爲所以給寺御器多不宜適者，• 議：自今以來郡欲爲給  
寺御器者(缺簡) 算如故。 郡二千石官共令 甲<sup>28</sup>

(17)과 (18)은 중앙의 어사와 승상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이다. (17)은 어사가 변경 지역의 요새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들에 대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원한 내용이다. (18)은 낭야군에서 여기(御器)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승상이 상주했던 내용이다. 변경 지역의 요새를 둘러싼 지방 관리 및 낭야군 관리의 상주와(I단계) 황제의 지시(II단계), 그리고 유사(III단계)를 거쳤을 것이지만, 이를 정리한 승상어사의 논의와 청원(IV단계)부터 기록했다. (17)은 마지막 황제의 재가인 VI 단계를 추가했다.

여섯째는 I, II, III, IV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V 단계만을 기록한 사례다.

(19) 五十 制曰：諸補丞相史、太尉史者，謹以功第次、明律令者。<sup>29</sup>

27 『이년율령』 「津關令」 簡488~491.

28 陳松長 主編(2020), 『嶽麓書院藏秦簡(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6)』)으로 약칭) 簡212~214.

29 『장가산336호』 「功令」 簡112. 이 외에도 簡132 “七十七 制曰：萬年、長陵、安陵、北陵民爲吏五百石以下屬尉佐，不欲罷以令罷者，【皆上】功勞復用.”; 簡133 “七十八 制曰：謁者出爲吏，以視事久次.”; 簡134 “七十九 制曰：宦者爲吏毋以爵.”; 簡135 “八十 制曰：五大夫以上欲爲吏及諸官除者，許之.”도 있다.

공령(功令)에 해당하는 이 령문은 황제의 의견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령문 역시 I, II, III, IV 단계를 거쳤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승상어사가 상주한 IV단계의 청원에 대해 황제의 견해를 덧붙인 V단계의 내용만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출토 간독의 령문은 각 단계별로 진행된 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령문은 조령의 축소판이었다. I, II, III, IV 각 단계별로 시작한 령문이 있는가 하면, I, II, IV 단계에서 시작한 령문의 경우 유사와 승상어사의 논의와 청원의 근거가 된 II단계의 황제 지시를 다시 인용하기도 했다. 물론 각 령문이 조서의 모든 단계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IV단계 승상어사의 논의(‘議’)나 청원(‘請’)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령문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생략되어 ‘제조어사’(制詔御史)<sup>30</sup> 혹은 ‘제왈’(制曰)만 령문으로 남기도 했다.

### 3. 령의 정비

#### 3.1. 조령의 생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령은 조서의 축소판이었다. 다시 말하면 령은 곧 황제가 조서를 통해 내린 명령, 즉 조령(詔令)이었다. 황제가 내린 조령의 원문에는 조령을 반포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기록되었던 것과 달리 령은 이 중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 누가 왜 그랬을까?

조령은 하나의 문건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I, II, III, IV, V, VI 단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복잡하고 긴 문건이었다. 그 조령이 그대로 유관 관부에

30 『이년율령』 「津關令」 簡492. “二、制詔御史，其令扞關、鄖關、武關、函谷【關】、臨晉關，及諸其塞之河津，禁毋出黃金、諸寶黃金器及銅，有犯令。”

하달되었다. 그중에는 중앙정부의 공경과 장군, 제후상(諸侯相)도 있었지만 지방 행정단위인 군현도 포함되었다. 거연한간의 원강오년조서책(元康五年詔書冊)에는 이 점이 잘 드러난다.

(20) 御史大夫吉昧死言

丞相相上大常昌書言

大史丞定言元康五年五月二日壬子日夏至宜寢兵大官抒井更水火進鳴  
鷄謁以聞布當用者

• 臣謹案比原泉御者水衡抒大官御井中二千石二千石令官各抒別火官先  
夏至一日以除隧取火授中二千石二千石官在長安雲陽者其民皆受以日至  
易故火庚戌寢兵不聽事盡甲寅五日

臣請布臣昧死以聞

制曰可

元康五年二月癸丑朔癸亥御史大夫吉下丞相承書從事下當用者如詔書  
二月丁卯丞相相下車騎將軍將軍中二千石二千石郡太守諸侯相承書從事  
下當用者如詔書

少史慶令史宜王始長

三月丙午張掖長史延行太守事肩水倉長湯兼行丞事下屬國農部都尉小府  
縣官承書從事下當用者如詔書／守屬宗助府佐定

閏月丁巳張掖肩水城尉誼以近次兼行都尉事下候城尉承書從事下當用者  
如詔書／守卒史義

閏月庚申肩水士吏橫以私印行候事下尉候長承書從事下當用者如詔書／  
令史得<sup>31</sup>

31 謝桂華·李均明·朱國昭(1987), 『居延漢簡釋文合校』, 北京: 文物出版社(이하 『거연한간』  
으로 약칭) 簡10.27+5.10+332.26+10.33+10.30+10.32+10.29+10.31. 綴합의 순서는 大庭脩  
(1982)를 따랐다.

이 조령에는 태사승이 원강 5년 5월 2일 하지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승상이 검토한 이후 그 내용을 황제에게 청원하였고(‘請’), 황제가 이를 재가했던 과정이(‘制曰可’) 담겨 있다. 이 조령은 어사대부에 의해 승상에게로 전달되었고, 다시 거기장군, 장군, 중이천석, 이천석, 군태수, 제후상에게 전달하여 속국도위, 후장(候長)까지 하달되었다. 이 조령이 발견된 곳이 견수후관 유지였다는 것은 말단 행정단위에서 위와 같이 관원의 상주, 승상의 청원, 황제의 재가라는 기본 내용이 갖춰진 긴 조령문 전체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중앙으로부터 조령을 수령한 지방 행정 단위에서는 마땅히 그 조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령이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계속 참조해야 할 법령이라면 이를 보관해야 했을 것이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조령이 더욱 쌓여 갔다면 지방 관원이 이를 참조하기에 무척 번거로울 것임에 틀림없다. 말단 행정단위에서 각자 일일이 이를 정리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군 단위에서 일단령문이 정리되었을 것이라는 히로세 쿠니오(廣瀬薰雄)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sup>32</sup>

(21) 廿年四月丙戌朔丁亥，南郡守騰謂縣·道嗇夫：… 今法律令已具矣，而吏民莫用，鄉俗淫泆之民不止，是即廢主之明法也，而長邪僻淫泆之民，甚害於邦，不便於民。故騰爲是而脩法律令·田令及爲閒私方而下之，令吏明布，令吏民皆明知之，毋距於罪。<sup>33</sup>

(22) 【與】同罪，其徭使而不敬，唯大嗇夫得笞之如律。新地守時脩其令，令都吏分部鄉邑，問不從令者，論之。•十九<sup>34</sup>

32 廣瀬薰雄(2010), pp. 111~116.

33 陳偉 主編(2014), 『秦簡牘合集1卷(上): 睡虎地秦墓簡牘』, 武漢: 武漢大學出版社(이하 『수호지진간』으로 약칭) 「語書」簡1~5.

34 『악록진간(7)』簡110.

(21)의 『수호지진간』 「어서」(語書)에서 남군 태수 등(騰)이 법률과 령 등을 정리(脩)했다는 것이나, (22)에서 새로이 설치된 신지(新地)의 태수가 법령을 정리(脩)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군에서 정리된 령을 현 이하의 행정 단위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율령을 정리한 단위가 군이기 때문에 하급 단위인 현은 정기적으로 군에 가서 율령을 교수(校讎)해야 했다.

(23) □年四月□□朔己卯, 遷陵守丞敦狐告船官□: 令史應讎律令沅陵, 其假船二艘, 勿留.<sup>35</sup>

(24) 歲讎辟律於御史<sup>36</sup>

이야진간 (23)의 기록은 천릉현의 령사가 천릉현이 속한 동정군의 원릉에 가서 율령을 교수하였다고 하였고, (24)에도 해마다 율령을 교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24)에서는 어사에게 가서 교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릉은 동정군 중 어사의 관부가 있었던 곳이었을 것이다. 군태수가 법령을 정비했고, 그 법령의 교수는 군의 어사가 담당했던 것이다.<sup>37</sup>

군에서는 점차 쌓여 가는 조령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적극적 정비가 필요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조령을 최대한 생략하는 것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출토된 령문은 조령의 번잡한 격식을 생략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겨 놓았다. 다만 그 생략의 방식은 일정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미 2.2.절에서 조서의 일부 단계가 생략된 령문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사례들로부터 령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략되었고, 그것도 매우 임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복수의 령문이 남아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생략

35 『이야진간(1)』 簡6-4.

36 『수호지진간』 「尉雜律」 簡199.

37 游逸飛(2021), 『製造「地方政府」』,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p. 224.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예 조령의 제작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최종적인 결론만을 남겨 놓아 깔끔한 모습을 갖춘 것도 있다.

- (25) • 御史請 制所譴而當論者, 皆賞二甲, 罪重于譴, 以律論之. • 制曰: 吏所舉劾以聞及上書者, 有言也, 其所劾言者即當治論皆毋以譴, 它如請 • 廿三<sup>38</sup>
- (26) • 令曰: 制所譴而當論者, 皆賞二甲, 罪重于譴, 以律令論之, 吏所舉劾以聞及上書者, 有言也, 其所劾言者, 即當治論, 皆毋以譴論. • 廷甲第廿一<sup>39</sup>

(25)와 (26)은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지만 표현이 달라 령문의 정비 과정을 알 수 있다. (25)에는 어사가 주무 담당자와 논의를 한 후 청원한(‘請’) 후 황제가 그 청원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과정이 적혀 있다. I, II, III 단계와 VI의 최종 재가가 생략되었다. 그런데 (26)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사청’(御史請)과 ‘제왈’(制曰)이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맨 앞에 ‘령왈’이라는 말을 붙였다. (25)도 원래 조서를 생략한 것이지만, (26)에서는 일부나마 남아 있는 조령 문서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령왈’이라는 말을 붙여 정비했다.

- (27) • 縮請: 令內史及郡各得爲其界中人解爵, 毋得爵, 中縣, 它郡人爲吏它郡者, 得令所爲吏【郡黔】<sup>40</sup>
- (28) 自今以來, 吏及黔首有贖萬錢以下而謁解爵一級以除, 及當爲疾死, 死事者後謁毋受爵以除贖, 皆許之. … 鼎者勞盈及諸當拜爵而即其故

38 『악록진간(6)』 簡210~211.

39 『악록진간(5)』 簡214~215.

40 『악록진간(7)』 簡033.

爵如鼎及拜後爵者, 皆不得解【其故爵】之當即者以除賞贖. 爲人除賞贖者, 內史及郡各得爲其界中人除, 毋得爲它郡人除. 中縣、它郡人爲吏它郡者, 【得令所爲】吏郡黔首爲除賞贖. 屬邦與內史通相爲除. • 爲解爵者, 獨【得】除賞贖. 令七牒. 請之. • 三<sup>41</sup>

- (29) • 令曰: 吏及黔首有賞贖萬錢以下而謁解爵一級以除, 【及】當爲疾死、死事者後, 謁毋受爵. 以除賞贖, 皆許之. … 鼎者勞盈及諸當拜爵而即其故爵如鼎及拜後爵者, 皆不得解其故爵之當即者以除賞贖. 爲人除賞贖者, 內史及郡各得爲其界中人除, 毋得爲它郡人除. 【中】縣、它郡人爲吏它郡者, 得令所爲吏郡黔首爲除賞贖. 屬邦與內史通相爲除. 爲解爵者, 獨得除賞贖. 令七牒. • 尉郡卒令第七十六<sup>42</sup>

(27), (28), (29)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령문이다. (27), (28), (29)에는 물결선이 공통되며, (28), (29)에는 점선이 공통된다. (27)의 물결선 부분은 승상 관이 청원한(‘請’) 내용이다. 아마도 (28), (29)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도 원래는 (27)과 같이 승상 관이 청원하는 형식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28)에서는 “관이 청원”(縮請)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또 다른 내용을 함께 묶어서 마지막에 “청원”한다고(‘請之’) 바꾸었다. (29)에서는 이것마저 생략하여 조령의 격식을 모두 지우고 맨 앞에 ‘령왈’(令曰)이라는 말을 붙여 령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령왈’로 시작하는 조문이 악록진간 5권 2조에 집중되어 있는데,<sup>43</sup> 모두 이와 같은 정비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보아도 좋

41 『악록진간(7)』 簡015, 026~032.

42 『악록진간(5)』 簡138~145.

43 『악록진간(5)』 簡100~101 “• 令曰: 制書下及受制有問議者, 皆爲簿, 署初到初受所及上年日月、官別留日數、傳留狀、與對偕上. 不從令, 貲一甲. • 卒令乙五”; 簡102 “• 令曰: 御史、丞相、執灑以下有發徵及爲它事, 皆封其書, 毋以檄. 不從令, 貲一甲. • 卒令乙八”; 簡103~104 “• 令曰: 諸傳書, 其封毀, 所過縣官【輒復封以令、丞印】封纏解, 輒纏而封其上, 毋去故封. 不從令, 貲丞、令、【令】史一甲. • 卒令乙十一”; 簡105 “• 令曰: 上事, 散書, 取急用者上, 勿謂刺. 不從令, 貲一甲. • 卒令乙廿三” 등.



다.<sup>44</sup>

(30) 舉，不如令者，論之，而上奪爵者名丞相，丞相上御史。都官有購賞賞債者，如縣，兵事畢矣，諸當得購賞賞債者，勿令巨舉，令縣皆亟予之。■  
 丞相御史請：令到縣，縣各盡以現錢不禁者亟予之，不足，各請其屬所執灑，執灑調均；不足，乃請御史，請以禁錢貸之，以所貸多少爲償，久易期，有錢弗予，過一金，丞、令、令史、官齋夫、吏主者□□□□者以其官爲□□□□□□<sup>45</sup>

(31) • 制詔丞相御史：兵事畢矣，諸當得購賞賞債者，令縣皆亟予之。令到縣，縣各盡以現錢，不禁不足各請其屬所執灑，執灑調均，不足，乃請御史，請以禁錢貸之，以所貸多少爲償，久易期，有□□坐一□，丞、令、令史、官齋夫吏主者奪爵各一級，無爵者以(?)官爲新地吏四歲，執灑令都吏循行案舉不如令[者]，論之，而上奪爵者名丞相，丞相上御史。都官有購賞賞債不出者，如縣。• 內史官共<sup>46</sup>

(30)과 (31)도 같은 내용이지만, (31)의 단계에서는 황제가 승상어사에 게 제조하는 II단계의 구절이 남아 있는 반면, (30)에서는 승상어사가 황제에게 청원(‘請’)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 다만 (30) 앞쪽에 ‘제조승상어사’ 부분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30)의령문이 먼저 만들어

44 임중혁(2012a), 「秦제국의 승과 그 편제 원칙」,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서울: 경인문화사, p. 261.  
 45 陳松長 主編(2015), 『岳麓書院藏秦簡(肆)』,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4)』로 약칭) 簡338~339+309~310+373. 綴合의 순서는 宮宅潔 編(2023),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註』, 京都: 汲古書院(이하 『경도대악록(1)』로 약칭) p. 313을 따랐다.  
 46 『악록진간(4)(5)(6)』 簡(4)308+(6)69+(5)269+(5)270. 綴合의 순서는 『경도대악록(1)』 p. 313에 따랐다. 다만 『경도대악록(1)』은 “制詔~”로 시작하여 “~令”으로 끝나는 형식의령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지만(p. 318), 필자는 본문에서 서술하듯이 조령의 생략은 매우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형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졌고, 나중에 (30) 부분 중 승상어사의 청원(請) 표현이 생략되었을 것 같다. 물론 동일한 조령 원문을 보고 서로 다른 주체가 상이한 방식으로 생략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 단지 (31)은 (30)에 비해 황제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어느 령문은 황제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제조어사’라는 부분이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령문에서는 그 내용이 승상어사 혹은 유사의 청원 내용 속에 인용되어 나오기도 한다. 때로는 지방 행정 담당자의 건의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내용을 승상어사가 대신하기도 한다. 논의한 내용이라고만 표기하기도 하고, 청원한 내용이라고도 한다. 황제가 재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황제가 승상어사가 청원한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제서(制書)의 내용을 기록하기도 한다. 너무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략의 원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생략이 되었다는 것은 생략의 주체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암시한다. 또한 원래의 조령을 1차적으로 정비한 (27)의 령문이 다시 (28)로 정비되고 다시 (29)로 정비되었듯이 령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되었다.

한편 악록진간에는 율령의 시행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령문이 있다.

(32) • ① 新律令下, 皆以至其縣、都官廷日決. ② 故有禁, 律令後爲梟名及減益梟者, 以奏日決. • 卒令乙卅二.<sup>47</sup>

(33) • 令曰: 諸所上而爲令, 詔曰可, 皆以書下日定其奏日下之, 其當以時下, 各以下時定之. • 卒令乙廿七.<sup>48</sup>

47 『악록진간(5)』 簡107.

48 『악록진간(5)』 簡106. 정리자는 “• 令曰: 諸所上而爲令, 詔曰可, 皆以書下日定, 其奏日下之, 其當以時下, 各以下時定之. • 卒令乙廿七.<sup>106/1907</sup>”로 표점하였으나 陳偉(2018), 「〈岳麓書院藏秦簡(五)〉校讀(續)」, 簡帛網 2018.3.10.; 陶磊(2018), 「讀〈岳麓書院藏秦簡〉(五)割記」, 簡帛網 2018.7.1.에 따라 “以書下日定其奏日下之”로 붙여 읽었다.

(33)의 “상주해서 령을 만들고자 해서”(諸所上而爲令)는 (8), (9), (11)에서와 같이 지방 혹은 중앙의 행정 담당자가 기존의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상주하여 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0)의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상주한 내용을 상국과 어사가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율령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금지 사항에 죄명을 추가하거나 그 죄의 형량을 증감하게 된다. 그런데 (32)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첫째, 새로운 율령이 만들어져 하달되었다면 현도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결옥(決獄)을 하도록 하고 ①), 둘째, 기존 율령 후에 죄명이 추가되거나 그 형량의 증감이 생기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상주한 날짜(奏日)를 기준으로 결옥을 하라고 했다. ②) 즉 상주한 결과 새로운 율령이 만들어졌다면 령이 하달된 날짜(書下日)가 아니라 령이 현도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라면 상주한 날짜가 하달된 령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주한 결과 기존의 율령이 추가 개정되었다면 상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以奏日決’) 상주한 날짜가 언제인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33)에서는 상주하여 황제의 재가가 떨어져 령이 만들어진 경우 실제 상주한 날이 아니라 황제가 문서를 하달한 날로 처리하라고 규정했다.(‘以書下日定其奏日下之’) 요컨대 상주하여 황제의 재가를 거쳐 기존 율령이 추가 개정된 경우라면 령문에 반드시 하달한 날을 기록해야 했을 것이다.

(34) 九十一 丞相上長信詹事書言, 故右殿馬府有秩乘車頻陽官大夫定罷官當復用. 長信詹事官屬毋乘車, 又不得補頻(陽), 請移內史調用. 它有等比. 御史奏請許. 制曰: 可. 元年六月戊辰下.”<sup>49</sup>

49 『장가산336호』 「功令」 簡153+160. 黃浩波, 「張家山三三六號漢墓竹簡《功令》編連芻議」, 簡帛網 <http://www.bsm.org.cn/?hanjian/8932.html>의 綴合에 따랐다.

- (35) 丞相議, 西宮詹事, 詹事湯沐邑在內史、郡者, 亦移內史、郡守用補, 比。  
·御史奏, 制曰: 可. 二年十月戊申下.<sup>50</sup>
- (36) ·廿七年十二月己丑以來, 縣官田田徒有論繫及諸它缺不備穰時, 其縣  
官求助徒穰者, 各言屬所執灑, 執灑□爲調發□. …… 執灑令吏有事縣  
官者, 謹以發助徒□如律令. ·曰: 可. ·縣官田□□□舍 【甲】九<sup>51</sup>

(34), (35)에는 령문이 하달된 날이 적혀 있다.<sup>52</sup> 승상이 장신첨사(長信詹事)와 서궁첨사(西宮詹事), 첨사탕목읍(詹事湯沐邑)의 상서를 받아서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황제에게 상서를 올렸다고 했으므로, 이들 관부에서 상주한 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기』 삼왕세가에 인용된 조령에는 상주한 날이 일일이 기록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34)와 (35)의 령문에는 그 상주한 날을 적지 않았다. 상주한 내용이 황제의 재가를 거쳐(‘制曰: 可’) 기존 령을 개정한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상주한 날 대신에 령이 하달된 날을 적었던 것이다. (36)에는 27년 12월 을축일이 적혀 있다. 비록 (34), (35)와 같이 하달했다(‘下’)라고 쓰이지 않았어도 황제의 재가를 거쳐(‘曰, 可’) 령문이 된 이상, 이 날짜는 황제의 재가를 거쳐 하달된 날임에 틀림없다. 그 령문의 내용도 기존 율령의 개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출토 법령 간독 중에 이렇게 황제의 재가를 거쳐 하달된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53</sup> 필자

50 『장가산336호』 「功令」 簡161.

51 『악록진간(6)』 簡228~235.

52 漢代에는 松柏漢簡의 “·令丙第九, 丞相言: 請令西成、成固、南鄭獻杷杷各十, , 至不足, 令相補(?)不足, 盡所得. … 御史奏, 請許. 制曰: 可. 孝文皇帝十年六月甲申下.” (荊州博物館(2008), 湖北荊州紀南松柏漢墓發掘簡報, 『文物』 2008-4); 『거연한간』의 “制詔納言其令百遠屢省所典【脩】厥職務順時氣 ·始建國天鳳三年十一月戊寅下 EPT59:61”와 같은 사례가 있다.

53 『악록진간(5)』 簡188~189 “·十三年三月辛丑以來, 娶婦嫁女必參辨券□. 不券而訟, 乃勿聽, 如廷律□. 前此令不券訟者, 治之如內史律. ·謹布令, 令黔首明知. ·廷卒□”; 簡191~193 “【·】五年十一月戊寅, 令耐擧以下獄已斷而未過六句者, 得以賞除. … ·廷甲四”

는 그 까닭을 명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되면서 그 명문의 효력 개시 일자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상주한 날짜와 그 상주 내용이 명으로 만들어져 하달된 날짜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다. 상주한 이후 그것을 기존의 율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결할 수 없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무 담당자의 의견이 마련되고, 다시 이를 상관인 이천석관 혹은 승상어사와의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제의 재가를 거쳐 령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달된 날을 적어야 했던 것이다. 이를 전달받은 지방 하급기관에서는 명문에 기입된 하달된 날짜를 그 명문의 효력 개시 일자로 간주하여 결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명문을 다시 정비해야 했다면 이 효력 개시 일자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하달된 날짜 역시 기입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현재 많은 명문 중에 ‘지금부터’(自今以來)라고 적혀 있는데, 이 명문에는 본래 하달된 날짜가 기록되었다가 명문의 정비를 거치면서 생략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37) • 十三年三月辛丑以來, 娶婦嫁女必參辨券。不券而訟, 乃勿聽, 如廷律。前此令不券訟者, 治之如內史律。• 謹布令, 令黔首明知。• 廷卒 □<sup>54</sup>

(38) • 諸所稅取反者·收人而不髡者、即亡、皆加其臯一等。其前令亡者、以此令論之。• 十一<sup>55</sup>

(39) • 吏捕告道徼外來爲閒及來盜略人、謀反及舍者, 皆勿賞。• 隸臣捕道徼外來爲閒者一人, 免爲司寇, 司寇爲庶人。道故塞徼外蠻夷來盜略人而得者, 黥劓斬其左趾以爲城旦。前令獄未報者, 以此令論之。斬爲城旦者,

의 사례가 있다.

54 『악록진간(5)』 簡188~189.

55 『악록진간(7)』 簡C4.1-1-1+『악록진간(5)』 簡72. 『악록진간(7)』이 출간되면서 악록(5) 簡72(1128+C4-1-11)가 악록(7) 簡C4.1-1-1와 철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過百日而不死, 乃行捕者賞. 縣道人不用此令. • 廷卒乙廿<sup>56</sup>

가령 (37), (38), (39) 모두 '전령'(前令) 즉 이 령문보다 앞선 경우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령문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그런데 (37)은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以來') 기입하고 있는 반면, (38), (39)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38), (39)는 조령이 반복되어 령이 만들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령문을 정비하면서 령의 효력 개시 일자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날짜가 생략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 3.2. 령의 결합

그러나 이렇게 조령의 몇 단계를 생략했다고 해도 여전히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40) • 御史言: 子徒隸園有令, 今或盜牧馬、牛、羊徒隸園中, 盡蹂其稼. 請: 自今以來盜牧馬、牛、羊徒隸園中壹以上, 皆貲二甲. 吏廢官, 宦者出宦, 而沒其私馬、牛、羊縣官. 有能捕、誦告犯此令<sub>□</sub>□傷樹木它稼及食之, 皆令償之, 或入盜牧者與同灑. • 請: 諸盜牧馬、牛、羊縣官園者, 皆用此令. • 廿<sup>57</sup>

(41) ① ·尉議: 中縣有罪罰當戍者及陽平吏卒當戍者, 皆署琅琊郡; 屬邦、道當戍東故徼者, 署衡山郡. 它如令. 縮請許. ② 而令中縣署東海郡, 秦原署四川郡, 東郡、叁川、穎川署江湖郡<sub>⊥</sub>, 南陽、河內署九江郡, 南郡、上黨、屬邦、道當戍東故徼者, 署衡山郡. 縮請許. ③ 而令郡有罪罰當戍

56 『악록진간(5)』 簡176~178.

57 『악록진간(5)』 簡035~038.

者泰原署四川郡<sub>上</sub>, 東郡、叁川、潁川署江湖郡<sub>上</sub>, 南陽、河內署九江郡, 南郡、上(缺簡)者, 署衡山郡, 它如令。—<sup>58</sup>

(40)은 어사가 도예원(徒隸園)에서의 목축을 제한하는 청원(請)을 상주한(言) 뒤에 다시 현관원(縣官園)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해 달라고 청원했던(請) 내용을 적고 있다. I, II, III단계를 생략하고 IV단계에서 어사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인용하고 논의 결과를 청원해서 령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현관원(縣官園)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청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청원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이 령을 사용한다’(皆用此令)라는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다.

(41)도 마찬가지로 I, II단계가 생략되었지만, 업무 담당자인 위(尉)가 논의한 결과를 승상 관(縮)이 황제에게 청원(請)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산군으로 이동 배치하는 자들이 ①에서는 중현(中縣)의 벌수(‘有罪罰戍者’), 양평(陽平)의 수졸(‘吏卒當戍者’), 속방(屬邦)과 도(道)의 수졸(‘當戍東故徼者’)이, ②에서는 양평 이외 지역의 수졸과 속방·도의 수졸이, ③에서는 중현 이외 지역의 벌수와 속방·도의 수졸이 각각 같은 패턴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대상을 점차 추가했던 과정이 예상된다. 여러 차례 이어진 조령의 내용을 모두 옮겨 적지 않고, 이 중 승상 관의 청원을 거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령문을 정비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령의 격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몇 차례의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번잡한 형태로 남아 있는 령문도 있다.

(42) 自今以來, 治獄以所治之故, ①・受人財及有賣買焉而故少及多其價, 雖

58 『악록진간(5)』 簡001~005.

毋枉也, 以所受財及其貴賤價, 與盜同灋<sub>ㄴ</sub>.

② 假<sub>ㄴ</sub>、貸錢金它物其所治、所【治】之親所知以□□以所假、賃、費、  
貸錢金它物其息之數, 與盜同灋<sub>ㄴ</sub>.

③ 假<sub>ㄴ</sub>、貸錢金它物其所治之室人、所治之室人父母、妻子、同產, 雖  
毋枉也, 以所假、賃、費、貸錢金它物其息之數, 與盜同灋.<sup>59</sup>

이 령문에는 최초의 제안자부터 승상어사의 전달과 논의, 청원, 그리고 황제의 재가 등 조령 문서에 부수되는 부분이 모두 생략되었다. ‘자금이래’(自今以來)만 남아 있어 령문의 하달 시점도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의 정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①은 옥리가 직접 재물을 받거나 매매 차익을 취하는 경우이고, ②는 피고와 피고의 친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③은 피고의 실인(室人)과 그 가족에 대한 금전 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 다른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따로따로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서 령문은 여전히 매우 번잡하다.

여기가 생략 외에 또 다른 령의 정비 작업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 방법은 ‘급’(及)자를 활용하여 두 가지 유사한 령문을 결합함으로써 령문 내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었다. 필자는 진한시기 문헌 특히 법률 관련 간독에 나오는 ‘급’이 허사로서 매우 중요한 어법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60</sup> 그 글에서는 ‘급’의 어법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원칙의 순서와 표현을 조금 바꾸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 ‘급’은 <두 개>의 구절을 병합한다는 점이다. 조문 중에는 여러 개의 ‘급’이 연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지 여러 개의 구절을 묶어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는 두 개의 구절을 ‘급’으로 결합한 뒤, 다시 그

59 『약록진간(5)』 簡229~236.

60 김병준(2018), 「표지로서의 허사: 秦漢시기 법률 속 ‘及’의 어법적 기능」, 『중국고중세사 연구』 48.



것이 다른 구절과 두 개씩 결합한 결과다. 이렇게 두 개씩 결합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이어가면서 여러 구절을 중층적으로 구축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급’에 의해 중층적으로 구성된 구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의 이 제1원칙에 근거하여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며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급’이 연결되어도 먼저 어느 하나의 ‘급’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야 하고, 그렇게 둘로 나뉜 부분 안에 다른 ‘급’이 있다면, 역시 그 안의 어느 하나의 ‘급’에 의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한편 ‘급’ 외에 ‘약(若)’이 사용되기도 한다. ‘급’을 위주로 사용하여 결합하되, ‘약’은 작은 단위를 연결할 때, ‘급’은 그보다 큰 단위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 ‘급’으로 두 개의 구절을 병합할 때에는 각 구절이 하나의 범주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각각 다른 범주를 가리키게 된다. 가령 ‘급’의 앞 혹은 뒷부분 중에는 여러 개의 명칭이 함께 묶여서 배열되는 경우가 있는데(abc 及 def), 앞쪽의 abc와 뒤쪽의 def는 각각 하나의 범주를 구성한다. 또 여러 개의 ‘급’에 의해 중층적으로 결합된 구문의 경우(<a及bc> 及 <de及f>) 일차적으로는 <a及bc>와 <de及f>가 각각 하나의 범주를 구성하지만, 하층 단위인 a와 bc, de와 f도 다시 각각 세분화된 범주를 구성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당시 형벌 체계를 비롯해 각종 물명(物名)이 어떻게 범주를 이루면서 세분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원칙. ‘급’의 앞뒤에 오는 구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급’의 앞에 간단한 명사구가 오면 뒤에도 명사구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긴 구절이 오게 되면 뒤에도 앞쪽과 동일한 구문 구조의 구절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유의할 때 ‘급’이 포함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而)자와 같은 허사로 추가되는 조건과 어느 부분에서 나뉘는지 알 수 있다.

필자가 설정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면 ‘급’으로 연결된 진한 율령 조

문을 구조적으로 분해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해 과정을 역으로 적용하면 각 율령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물론 맨 처음령문을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급’으로 결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령문이 만들어진 이후 유사한 내용의령문이 다시 반복되었다면 많은 구문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겨난 중복과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 ‘급’을 사용하여 두 조문을 결합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음의 사례는령문이 아니라 율문의 사례이지만, 법령이 추가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43) 田律曰：

- ① 吏歸休、有縣官事，乘<①(乘馬)及②(縣官乘馬)>過縣，欲<③(賞芻藁、禾粟、粟)及④(買菽)>者，  
 ② ⑤縣以朔日平價受錢。先爲<⑥(錢)及⑦(券)>鈔，以令、丞印封，令令史、賦主各挾一辨，月盡發鈔令、丞前，以中辨券案讎錢，錢輒輸少內，皆相與磨除封印，中辨藏縣廷。<sup>61</sup>

먼저 ‘급’의 전후가 서로 다른 범주를 표시한다는 필자의 제2원칙에 따르면, ①의 ‘승마’와 ②의 ‘현관승마’는 각각 개인 말과 관청의 말을 가리키고, 또 ③와 ④는 각각 추고 등의 대여와 콩의 판매를 가리키며, ⑥와 ⑦는 각각 돈과 권서를 가리키는데, 모두 ‘급’의 앞뒤가 서로 다른 범주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악록진간 및 장가산 247호묘 이년율령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 (44) • 金布律曰：官府爲作務、市受錢，及受齋、租、質、它稍入錢，皆官爲鈔，謹爲鈔孔，須毋令錢能出，以令若丞印封鈔而入，與入錢者參辨券之，

61 『악록진간(4)』 簡111~113.

輒入錢匱中，令入錢者見其入。月壹輸匱錢，及上券中辨其縣廷，月未盡而匱盈者，輒輸之，不如律，貲一甲。<sup>62</sup>

- (45) 官爲作務、市及受租、質錢，皆爲匱，封以令、丞印而入，與參辨券之，輒入錢匱中，上中辨其廷。質者勿與券。租、質、戶賦、園池入錢，縣道官勿敢擅用，三月壹上見金、錢數二千石官，二千石官上丞相、御史。…<sup>63</sup>

그런데 (44)(45)는 모두 동전 향아리(錢匱)만 언급하고 있는 반면, (43)은 동전 향아리 외에 권서 향아리(券匱)가 포함되어 있다. (44)와 (45)는 입전(入錢) 혹은 수전(受錢)처럼 동전을 받은 경우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 규정했던 조문인 반면, (43)은 ㉠동전과 함께 ㉡권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전을 받은 것은 앞에서 ㉢콩을 팔았기 때문이고, 권서를 받은 것은 앞에서 ㉣추고(芻藁)·화숙(禾粟)·속(粟)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의 두 가지 조건을 열거한 뒤, ㉤에서는 “현에서 매월 1일의 평가(平價)로 동전을 받고”라고만 되어 있다. ㉢는 ㉣콩을 팔아서 동전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에서 규정된 사후 처리 내용은 (44), (45)와 똑같이 동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권서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은 콩을 팔아 동전을 받은 경우의 조문과 사료를 빌려주어 권서를 받은 경우의 두 가지 조문을 결합하면서, 동전을 받은 경우의 조문을 저본으로 하여 그대로 두고 여기에 권서를 받은 부분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권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부분을 빠뜨린 것이다. 다시 말해, (43)은

“乘㉠乘馬過縣，欲㉡買菽者，縣以朔日平價受錢，先爲㉢錢匱”

“乘㉣縣官乘馬過縣，欲㉤賁芻藁、禾粟、粟，…先爲㉥券匱”

62 『악록진간(4)』 簡121-123.

63 『이년율령』 簡429~432.

라는 두 개의 조문을 ‘급’으로 결합하여,

“乘<㉔(乘馬)及㉕(縣官乘馬)>過縣, 欲<㉖(賞芻粟、禾粟、粟)及㉗(買菽)>者 …  
先爲<㉘(錢)及㉙(券)>斷”

로 만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도 ㉖는 ‘수전’(受錢) 뒤에 ‘권’(券)을 ‘급’으로 묶어서,

“縣以朔日平價受錢及爲券”

이라고 하고, 나머지 뒷부분도 권서 처리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추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 조문은 전율(田律)의 율문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령문이 만들어졌다면 똑같이 ‘급’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결합했을 것이다. 원래부터 ‘급’이 사용되었을 경우와 나중에 ‘급’으로 여러 조문을 결합되었던 경우를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령문의 내용상 현격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43)처럼 내용상 일정 부분이 결락된 경우는 나중에 결합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41)과 (42)와 같이 내용이 중복되어 번잡할 경우도 역시 ‘급’에 의해 여러 조문을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완성된 령문이 없기 때문에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가령 (41)의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속방과 도에서 동쪽의 고요에 수졸로 가야 할 자라는 부분이 ①, ②, ③에 중복되므로 이를 마지막에 묶어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형산군으로 재배치되는 자들 역시 ①, ②, ③에 중복되므로 이를 묶어서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지역별 구분이 아니라 신분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묶어서 정리했을 수 있다. 또 (42)의 경우는 일단 옥리 스스로가 뇌물을 받은 경우와 피고가 뇌물을 받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급’에 의해 피고 부분인 ㉕, ㉖를

“假<sub>レ</sub>、賁錢金它物其所<sub>レ</sub>治、及 所<sub>レ</sub>【治】之親所知<sub>レ</sub>〈所<sub>レ</sub>【治】之室人、所治之室人父母、妻子、同産、〉以<sub>レ</sub>□□以所假、賃、費、賁錢金它物其息之數、雖母枉也、與盜同灋。”

로 결합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금’으로 옥리 부분인 ㉠와 결합하면 최종적으로

“自今以來、<sub>レ</sub>治獄以所<sub>レ</sub>治之故、治獄者 及 所<sub>レ</sub>治、及 所<sub>レ</sub>【治】之親所知<sub>レ</sub>〈所<sub>レ</sub>【治】之室人、所治之室人父母、妻子、同産、〉受人<sub>レ</sub>財及有賣買焉而故少及多其價、治者爲枉事、及 雖母枉毆(也)、與盜同灋。”

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3.3. 령의 분류와 령집의 편찬

조령이 생략, 결합 과정을 통해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분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지만 한다면 담당자가 모든 조령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전세문헌에도 약간의 령명(令名)이 남아 있지만, 악록진간을 비롯해 장가산 247호와 336호묘 그리고 송백한간 등에는 다수의 령문과 함께 그 령이 속해 있는 령명이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령이 분류되고 편찬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 (46) “初，文王芮，高祖賢之，制詔御史，‘長沙王忠，其定著令’” “贊曰 … 唯吳芮之起，不失正道，故能傳號五世，以無嗣絕，慶流支庶。有以矣夫，著于甲令而稱忠也！”<sup>64</sup>

64 『漢書』卷34 吳芮傳.

- (47) 孝景蒞政, 諸侯方命, 克伐七國, 王室以定. 匪怠匪荒, 務在農桑, 著于甲令, 民用寧康. 述景紀第五<sup>65</sup>
- (48) 又曰: 「令甲, 死者不可生, 刑者不可息. 此先帝之所重, 而吏未稱. (注) 文穎曰: 「...令甲者, 前帝第一令也.」如淳曰: 「令有先後, 故有令甲、令乙、令丙.」師古曰: 「如說是也. 甲乙者, 若今之第一、第二篇耳.<sup>66</sup>
- (49) 如淳曰: 「令乙, 騎乘車馬行馳道中, 已論者, 沒入車馬被具<sup>67</sup>
- (50) 詔曰: 「律云『掠者唯得榜、笞、立』. 又令丙, 篋長短有數.<sup>68</sup>

첫째, <령+간지>의 방식. 『진서』(晉書) 형법지에 “한의 결사비(決事比)를 모아 령갑(令甲) 이하 300여 편을 만들었다.”라는 구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46)~(50)에서 보듯이 령갑, 령을, 령병 혹은 갑령 등의 령명이 확인되었다. 문영(文穎)과 여순(如淳) 등의 주석을 참조하면 이 방식은 령이 반포된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그대로 덧붙여지는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46)의 갑령은 고조 시기의 령이고, (47)의 갑령은 경제 시기의 것이지만, (50)의 령병은 문제 시기의 령문이다. 따라서 갑, 을, 병의 순서로 령문이 분류된 것은 아니다. 갑, 을, 병으로 나눈 별도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거연한 간에 보이는 조서목록을 령갑의 목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sup>69</sup>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sup>70</sup> 다만 『진서』 형법지의 기록처럼 령의 정비와 재편을 거치면서 생겨난 령집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악록진간의 줄령(卒令)은 후술하듯 기존의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령문을 묶었던 령집인 것 같다.

65 『漢書』卷100 絳傳.

66 『漢書』卷8 宣帝紀.

67 『漢書』卷45 江充傳.

68 『後漢書』卷3 章帝紀.

69 陳夢家(1980), 「西漢施行詔書目錄」, 『漢簡綴述』, 中華書局, pp. 275~284; 大庭脩(1982), pp. 226~232.

70 富谷至(2000), pp. 111~112; 張忠燁(2012), pp. 111~113.

- (51) 十 諸吏惰倪欲避吏者, 皆免, 令戍三歲, 毋得以爵、賞除戍, 錮, 及子終身毋得爲吏. 犯令及吏除者, 皆奪爵各一級.<sup>71</sup>
- (52) 廿三、丞相上備塞都尉書, 請爲夾谿河置關, 諸漕上下河中者, 皆發傳, 及令河北縣爲亭, 與夾谿關相直. • 關出入、越之, 及吏卒主者, 皆比越塞關令. • 丞相、御史以聞, 制曰: 可.<sup>72</sup>

둘째, 〈주제+령+간지〉의 방식. 이미 『사기』 유림열전에 공령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최근 공표된 장가산 336호묘 한간에는 1~102에 이르는 숫자가 령문의 맨 윗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 차례 반포된 공령이 묶여져 하나의 령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51)과 같이 18매에 달하는 간의 맨 아랫부분에는 숫자가 아닌 간지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정리소조는 해당 령문이 본래 속해 있던 이전의 령집의 편호를 간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73</sup> 령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이다. 장가산 247호 이년율령에 포함된 진관령도 공령과 유사하다. 일부 간의 앞부분이 결락되어서 확인할 수 없는 간도 있지만 대부분 1에서 23에 이르는 숫자가 령문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521간과 522간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고 흑점만 기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승상이 노(魯)의 어사서의 문건을 상주하고 이에 대해 황제가 재가하는 과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의 조령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제정된 별도의 독립된 령문으로 생각된다.<sup>74</sup> 따라서 1~23의 령문이 령집으로 편찬된 이후 521~522간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71 『장가산336호』 「功令」 簡054.

72 『이년율령』 「津關令」 簡523~524.

73 荊州博物館(2022), 「湖北江陵張家山M336出土西漢竹簡概述」, 『文物』 2022-09, p. 68.

74 『이년율령』 「津關令」 簡521, “• 丞相上魯御史書, 請魯中大夫謁者得私買馬關中, 魯御史爲書告津關, 它如令. • 丞相、御史以聞, 制曰: 可.”; “• 丞相上魯御史書, 請魯郎中自給馬驕, 得買馬關中, 魯御史爲傳, 它如令. 丞相、御史以聞, 制曰: 可.”

배제할 수 없다.

악록진간에는 더 많은 주제별 령집의 사례가 확인된다. ‘비도적령’(備盜賊令)의 경우 도적에 대비하는 령문을 모은 것이고, ‘급공령·을’(給共令·乙)의 경우도 급(給)이 관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물건이나 사람의 조달과 관련한 령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복축작급타사령·갑’(卜祝酌及它祠令·甲), ‘복축작급타사령·을’(卜祝酌及它祠令·乙)의 경우도 작(酌) 혹은 사(祠)가 관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축·작 및 기타 제사와 관련된 령문을 모은 령집일 것이다. 사(祠)와 관련해서는 장가산 336호묘 공 42와 호가초장<sup>75</sup>에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호가초장 한울에는 아예 사률(祠律)이 존재한다.<sup>76</sup> 그 내용은 모두 제사와 관련한 것이므로 주제별 령집이라 보아도 좋다. 또한 ‘천리령갑’(遷吏令甲)은 관리의 이동과 관련한 령집인데, 간지명이 생략된 ‘천리령’(遷吏令)의 사례도 보인다. ‘천리령’이 추후에 다시 ‘천리령갑’ 등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간지명이 붙지 않은 령명 으로서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단순 생략일 가능성도 높다.<sup>77</sup>

그런가 하면 다음에 설명할 관서 명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식관공령·을’(食官共令·乙)의 경우 진시황릉 유지에서 ‘여산사관’(鄜山飮官) ‘여산사관우’(鄜山飮官右)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관서라 볼 수도 있겠지만, 식관(食官)은 어느 관부에서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제별로 분류한 령집일 가능성이 크다.

75 荊州博物館 編(2021),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選粹』, 北京: 文物出版社(이하 『호가초장』으로 약칭), 「臘律」簡2471~2470. “若齋而與妻婢姘及奸, 皆棄市。當給祠具而乏之, 及鬼神置不具進, 若當齋給祠而詐避者, 其宗廟、上帝祠也, 耐爲隸臣妾; 它祠, 罰金十二兩; 它不如令者, 皆罰金。”

76 『호가초장』 「祠律」簡1552, “二千石吏不起病者, 祠以特牛, 家在長安中者, 謁者致祠; 千石到六百石吏, 祠以少牢。”

77 陳松長(2017), 「岳麓秦簡中的令文格式初论」,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6, p. 46.



- (53) • 四司空共令 • 甲<sup>78</sup>  
 (54) • 四司空卒令<sup>79</sup>  
 (55) ■ 尉郡卒令 • 甲<sup>80</sup>  
 (56) ■ 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甲<sup>81</sup>  
 (57) ■ 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 • 第己 • 今辛<sup>82</sup>

셋째, 〈관서+령+간지〉의 방식. 설령(掣令)으로 잘 알려진 대홍로설령(大鴻臚掣令),<sup>83</sup> 태위설령(太尉掣令), 어사설령(御史掣令), 광록설령(光祿掣令), 난대설령(蘭臺掣令)이 여기에 속한다. 설령이라는 말은 그 지역 혹은 기관만의 법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법령 중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법령을 모아서 편집했다는 것이다.<sup>84</sup> 대홍로설령이 대홍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53)~(57)와 같이 관서의 명칭이 붙은 령집의 내용을 훑어보면 곧 알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령문이 다른 관서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서명이 붙은 령집의 경우에는 유난히 공령(共令)과 졸령(卒令)이 눈에 뜨인다. 이 공령과 졸령에 대해서는 간독이 공표된 때부터 계속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해 왔다.<sup>85</sup> ‘잡’(雜), ‘수’(率), ‘졸’(卒), ‘조’(曹)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여기서 일일이 개별 견해를 검토할

78 『악록진간(6)』 簡118.

79 『악록진간(6)』 簡157.

80 『악록진간(7)』 簡134.

81 『악록진간(4)』 簡307.

82 『악록진간(4)』 簡353.

83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1991), 『敦煌漢簡』, 北京: 文物出版社, 釋文 簡2324 “龍勒寫大鴻臚掣令津關.”

84 김병준(2006), 「중국고대 간독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p. 161.

85 宮宅潔(2023), 「廷內史郡二千石共令」, 宮宅潔 編,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註』, 京都: 汲古書院, pp. 515~527에 이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유는 없지만, 간단히 그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하자. 맨 처음 정리소조는 수호지진간에 위잡률(尉雜律)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악록진간에 위졸률(尉卒律)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서 ‘졸’을 ‘잡’으로 이해했다.<sup>86</sup> 그러나 악록진간의 다른 부분에서는 ‘졸’과 ‘잡’이 혼용되는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率)라고 보기도 했다.<sup>87</sup> 그런가 하면 부분의 뜻을 갖는 ‘졸’(倅)이라고 보기도 하고, 사졸의 뜻인 ‘졸’(卒)로 보기도 했다. 모두 ‘졸’(倅)이라는 자형을 살려서 그 뜻을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다. 필자는 ‘졸’의 의미를 좁혀서 구체적 의미를 찾기보다 오히려 넓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한자는 본래의 글자 그대로 쓰면서도 문맥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하기 마련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의미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장된 의미를 다시 구분하기 위해 ‘졸’이라는 본래의 원형에 상이한 편방을 좌우에 붙여 갔던 것이다. 사실 ‘잡’과 ‘수’, ‘졸’(倅)은 여러 가지를 모두 모아 둔다는 의미로서 서로 뜻이 통한다. 또 ‘군졸사’(郡卒史)도 같은 의미로 풀 수 있는데, 군이 졸사(卒史)를 조사(曹史)로 바꾸어 이해하기보다<sup>88</sup> 군의 여러 가지 업무를(雜) 모두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잡사’(雜史)가 그 본래의 의미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또 (53)의 ‘사관공공령’(四司空共令)과 (54)의 ‘사관공공졸령’(四司空卒令)을 ‘공’과 ‘졸’의 글자가 다르다고 서로 다른 령집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모두 사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령문을 묶어 놓은 령집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졸’(卒)의 의미는 ‘잡’(雜)으로 보아 ‘공’(共)의 의미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령집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한다.<sup>89</sup>

86 『악록진간(4)』.

87 周海鋒(2015), 「岳麓秦簡“尉卒律”研究」, 『簡帛』 2015-3; 임중혁(2012b), 「嶽麓書院藏秦簡의 卒令」, 『고대 중국의 통치메카니즘과 그 설계자들 4』, 경인문화사.

88 陳松長(2016), 「岳麓秦簡中的幾個令名小識」, 『文物』 2016-12, p. 64.

89 宮宅潔(2023)은 共令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령”이라고 풀이하면서 “給共令”은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給供令”으로 읽어야 한다고 한다. 필자는 그 의미를 좀 더 넓고 느슨하게 보아, 共과 卒 모두를 “관련된 여러 가지 令”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고 생

한편 (53), (54) 이외에 정졸령(廷卒令), 군졸령(郡卒令)도 사공, 정(廷), 군(郡)이라는 단일한 관서를 지칭했다면, (55), (56), (57)은 여러 관서를 동시에 표기했는데 그 뒤에 ‘졸’, ‘공’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여러 관서에서 동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령문이라고 여겨진다. (55) ‘위군 졸령’의 경우 치안을 담당한 위(尉)와 행정을 담당한 군이, (56) ‘내사군이천석관 공령’은 내사와 군이천석관이, 그리고 (57)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은 내사와 군이천석관에 더하여 정위(廷尉)가 동시에 참조해야 할 령문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56)이 이미 있는데 (57)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이 주목된다. (56)이 있는데 추가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56)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위가 참고할 내용<sup>90</sup> “정십오”(廷十五), “정십칠”(廷十七) 등 정령(廷令)으로서 이미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위를 포함한 내사, 군이천석관을 위한 (57)을 만든다는 것은 (56)을 만든 후에 누군가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한 령문을 모았다는 것이다. 령문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분류되어 령집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6) ‘내사군이천석관 공령’은 제갑(第甲), 제무(第戊), 제기(第己), 제경(第庚), 제을(第乙), 제정(第丁), 제병(第丙)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 각 령집 사이에는 몇 개의 령문이 기입되어 있는데, 정리조소의 복원순서가 맞다면 해당 령문은 뒤편에 명명된 령집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57)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은 역시 간지에 의해 분류되어 ‘·무·금경’(·戊·今庚), ‘·제기·금신’(·第己·今辛), ‘·제경·금임’(·第庚·今壬)으로 기록되었다. ‘무’(戊)가 ‘경’(庚)으로, ‘기’(己)가 ‘신’(辛)으로, ‘경’(庚)이 ‘임’(壬)으로 개편되었는데 모두 간지의 순서상 두 편씩 뒤로 옮겨졌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악록진간 안에서 이러한 개편의 이유를 암시하는 령문이 확인된다.

각한다.

90 廷卒令의 廷이 廷尉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宮宅潔(2023), p. 516.

- (58) • 諸當衣赤衣冒氈, 枸櫞杖及當鉗及當盜械而擅解衣物以上弗服者, 皆以自爵律論之, … 諸當鉗枸櫞杖者, 皆以鐵鑕盜械, 械者皆膠致桎梏. 不從令, 貲二甲. • 廷戊十七<sup>91</sup>
- (59) • 諸當衣赤衣[冒赤氈, 枸櫞杖及當鉗及當盜械而擅解衣物以上弗服者, 皆以自爵律]論之, 諸當鉗枸櫞杖者, 皆以鐵鑕盜械, 械者皆膠致其桎梏. 不從令者, 貲二甲. • 十五 — … ■ 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 · 戊 · 今庚<sup>92</sup>
- (60) • 律曰: 治書, 書已具, 留弗行, 盈五日到十日, 貲一甲; 過十日到廿日, 貲二甲. …… 執灑縣官所已前論, 不應律者, 皆當更論. 請亟令更論論失者. • 曰: 可. • 廷戊十二<sup>93</sup>
- (61) • 律曰: … 治書, [書]已具, 留弗行, 盈五日到十日, 貲一甲, 過十日到廿日, 貲二甲. … 執灑、縣官所已前論不應律者, 皆當更論. 請[亟]令更論論失者. □ • 諸與繫者及囚奸, … 弗知, 貲各二甲. • 十四<sup>94</sup>

(58)이 ‘정무(廷戊)라는 령집의 17조에 해당하는데, 점선으로 표시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59)는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 · 정무 · 금경(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 · 廷戊 · 今庚)으로 묶여 있는 령집의 15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8)의 ‘정령 제무(廷令 第戊)에 속했던 령문이 ‘내사군이천석관 공령(內史郡二千石官共令)과 합쳐지면서 원래 무(戊)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주기해 둔 채 제경(第庚)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60)과 (61)도 점선의 내용이 똑같다. (60)이 정무(廷戊)라는 령집의 12조에 해당하는데, 같은 내용이 (61)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 · 정무 · 금경(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 · 廷戊 · 今庚) 제14조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원래 속했던 령집의 이름을 생략했다. 따라서 ‘내사군이천석관 공령’ 중 2편이 ‘정내사군이천석

91 『악록진간(5)』 簡220~223.

92 『악록진간(6)』 簡37~42, 簡60.

93 『악록진간(6)』 簡256~258.

94 『악록진간(6)』 簡31~36

관 공령'의 맨 앞쪽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정령'(廷令)이 배치됨으로써 본래 정령의 위치가 2편씩 뒤로 밀려 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7조가 15조로, 12조가 14조로 옮겨 갔기 때문에 옮겨 가는 과정에서 순서의 조정이 있었을 것 같다. 요컨대 이미 정위의 '정령'(廷令)이 있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이를 다시 (56)의 '내사군이천석관령'(內史郡二千石官令)과 결합하여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이 만들어지며 조문의 순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한편 『악록진간(5)』에 실려 있는 '정내사기천관 공령·제기·금신'(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己·今辛)에는 2, 9, 13, 15, 18, 19, 20, 21, 24, 25, 26, 27, 36의 숫자가 붙은 조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기년을 보면, 숫자 2(1~8간)가 26년 12월을, 숫자 18(30~32간)이 26년 정월을, 숫자 27(56~58간)이 26년 4월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령집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배열했다고 생각된다.<sup>95</sup> 『악록진간(5)』에는 이어서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제경·금임'(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庚·今壬)에는 3, 5, 9, 11, 13, 16, 17, 18, 20, 21의 숫자가 붙은 조문이 기록되었다. 기년이 기입된 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역시 숫자가 붙은 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가산 336호 공령을 보면, 숫자 60(120~121간)은 문제 2년 11월이, 숫자 90(간152)에는 고황후 8년 8월이, 그리고 최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간에 각각 문제 원년 6월과(간160) 문제 2년 10월(간161)이 기록되어 있다.<sup>96</sup> 즉 반드시 시간의 선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령집은 시간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와는 상관없이 편집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령갑과 령을, 령병 역시 시간 순서대로 편집된 것이 아니다.

결국 현재 확인된 관서 단위의 령집에 의하면, 각 관서에 필요한 령문을 묶되 단지 시간의 선후로 령문을 추기한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가지 기

95 당시 한 해의 첫 달은 10월이었다.

96 『장가산336호』 「功令」 簡120~121, 簡152, 簡159~160, 簡161.

준으로 편집이 되었으며, 어느 하나의 관서가 사용할 령집뿐만 아니라 여러 관서가 사용할 령집이 편찬되었고, 일단 관서 공통의 령집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관서는 얼마든지 재편되어 새로운 조합의 관서가 활용될 수 있는 령집이 편찬되었던 것이다.<sup>97</sup>

(62) 北邊掣令第四, 北邊候長候史迹二日當三日<sup>98</sup>

(63) 系式, 樂浪掣令<sup>99</sup>

넷째, <지역+령+간지>의 방식. 세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세문헌과 간독에서 모두 확인되며, 이는 북변이나 낙랑과 같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법령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필요한 법령을 끌어 모아서(掣) 묶어놓은 것이다. 물론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을 것임은 분명하나, 다른 령집에도 동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악록진간 중 동정군으로 천사하라는 내용,<sup>100</sup> 혹은 정도군(定陶郡) 혹은 태산군(泰山郡)에서 상주하여 령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sup>101</sup> 이 령문들이 ‘정내사군이천석관 공령’(廷

97 임중혁(2012), p. 300에서는 쑤수를 즉각적으로 편명을 부여하기 곤란한 것을 묶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속해야 할 곳이 확정되면 구체적 편명을 부여하여 재차 편성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편찬 시차의 존재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악록진간』에 구체적 편명을 가진 備盜賊令이나 遷吏令 등이 쑤수와 동시에 확인된다는 것은 그것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98 『거연한간』 簡197:合10.28. 돈황 小方盤城에서도 北邊掣令 령문이 발견되었다. 李岩云(2009), 「1998年敦煌小方盤城出土的一批簡牘涉及的相關問題」, 『敦煌學輯刊』 2009-2, 簡98DXT4:5 “北邊掣令第六, 從衛尉博德行丞相事, 郎中令自爲行從御史大夫。”

99 『說文解字』 系部.

100 『악록진간(5)』 簡012 “【•】自今以來, 有誨傳言以不反爲反者, 輒以行詆律論之, 其有不口者, 徙洞庭, 洞庭處多田所. •十三.”

101 『악록진간(5)』 簡053~055 “• 定陰忠言, 律曰: 「顯大夫有臯當廢以上勿擅斷, 必請之.」 今南郡司馬慶故爲冤句令, 詐課, 當廢官, 令以故秩爲新地吏四歲而勿廢, 請論慶. 制書曰: 「諸當廢而爲新地吏勿廢者, 即非廢. 已後此等勿言.」 • 廿六; 簡073~075 “• 泰山守言: 新黔首不更昌等夫妻盜, 耐爲鬼薪白粲, 子當爲收, 彼有嬰兒未可事, 不能自食別傳輸之, 恐行死. 議:

內史郡二千石官共令)에 속해 있으므로, 동정설령(洞庭掣令), 정도설령(定陶掣令) 혹은 태산설령(泰山掣令)으로 묶었을 가능성도 크므로 결국 다른 기준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령집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상에서 령갑 혹은 줄령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주제별, 관서별, 지역별로 령집이 편찬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령문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령집이 만들어진다면, 동일한 령문이 여러 령집에 동시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서별로 분류된 경우 군졸령(郡卒令)이 있는가 하면, 군을 포함한 내사군이천석관졸령(內史郡二千石官卒令)이 있고, 나아가 정(廷)까지 포함한 정내사군이천석관졸령(廷內史郡二千石官卒令)이 있다. 군에서 참조해야 할 령문은 이 3가지 령집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군과 내사는 식관(食官), 천리(遷吏), 급(給) 등과 같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령문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관 관련 령문이 군졸령 혹은 내사군이천석관졸령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분류된 북변설령 혹은 특정 군의 설령의 령문과 군졸령, 내사군이천석관졸령, 정내사군이천석관졸령의 령문은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64) 坐藏臧爲盜在公令第十九 丞相常用第三<sup>102</sup>

(64)의 령문은 공령 제19(公令第十九)와 승상상용 제3(丞相常用第三)이라는 두 가지 령집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57)은 원래 기(己)였던 것이 지금 신으로(·今辛) 소속 령집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 경우는 ‘금’(今)이라는 글자가 없고 다른 명칭의 령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악록진간 (28)과 (29)의 령문은 조령을 생각하는

令寄長其父母及親所，勿庸別輸。丞相議：年未盈八歲者令寄長其父母、親所，盈八歲輒輸之如令。琅琊郡比。·十三 匱。”

102 李均明·劉軍(1993), 「武威旱灘坡出土漢簡考述—兼論“掣令”」, 『文物』1993-10, 簡7.

방식이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령문이다. (28)에는 령집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9)는 내사관공령(內史官共令)에 속한다. (30), (31), (32)은 동일한 조문이 3차례나 확인되는 사례다. (20)은 령집을 알 수 없지만, (22)는 위군졸령 제을 76(尉郡卒令第七十六)에 속해 있고, (21)은 어느 령집의 3번째 령문이라고(“·三”)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한 령집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약록진간에 동일한 조문이 여러 차례 중복되어 보이는 것은 각각 다른 령집에 속해 있었던 것을 옮기면서 생겨난 현상일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여러 차례 령문이 분류되고 령집이 편찬되었다는 것은 이를 만드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적어도 체계적이고 통일된 원칙이 있다기보다 매우 임의적으로 다양한 령집이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령문의 생략과 결합 역시 임의적이라 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 4. 맺음말: 령의 발취와 사용

진한 시기 령은 ‘지금’ 황제의 ‘옴은’(是) 명령으로서 율에 우선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령은 법전으로 성립되지 못한 채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실무 관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령의 반포와 그 변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본고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출토 간독자료를 이용해 진한시기 령이 반포되어 지방 행정단위에 이르러 이것이 리민(吏民)에게 하달된 뒤, 어떻게 정리되어 관리들이 활용하였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황제의 조령은 매우 긴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조령은 지방에 전달되어 시행되었지만, 점차 축적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보관하고 참조하기에는 불편했다. 그래서 이를 줄여야 했다.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조령의 형식적 요소는 최대한 생략했다. 다만 그 기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맨 처음 령의 필요성을 상주한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의 업무 담당자가 논의한 내용, 혹은 승상어사가 이를 황제에게 청원한 내용이 남기도 하였으며, 황제가 재가했다는 부분도 남았다. 어느 특정한 중앙 관서에서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조령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령을 줄였지만, 황제의 명령은 끊임없이 반포되어 하달되었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새로운 율령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존 율령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구문을 포함하는 령문이 다수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급’자를 이용하여 령문을 결합하면서 해결했다. 하지만 역시 결합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때로는 불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생략과 결합을 거친 뒤에는 편의적인 실제 활용을 위해 령문을 분류하고 령집으로 편찬해야 했다. 령문은 대략 시간별, 담당업무별, 관서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되어 묶였다. 그렇지만 역시 그 기준은 매우 임의적이었다. 시간의 선후에 따라 배열하기도 하지만 마구 섞여 있는 것도 있다. 주제별로 묶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집되기도 했다. 관서별로 묶을 때에도 하나의 관서를 위한 령문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개의 관서가 동시에 필요한 령문을 모으기도 하며, 여러 개의 관서 조합을 바꿔서 모으기도 했다. 지역별로 묶는 경우도 있지만 주제별, 관서별로 묶은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악록진간에는 동일한 령문이 여럿 확인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으로 하달한 체계적 법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령의 생략과 결합, 분류가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령을 하달받은 하급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악록진간에 보이는 군졸령이나 위군졸령은 군에서, 내사관공령·내사호조령·내사창조령·내사방금포령은 내사에서 관서별로, 정졸령은 중앙의 정위에서 각각 관련 령문을 분류하고 령집으로 묶었을 것이다. 이외에 내사군이천석관공령은 동급 행정단위인 내사와군이천석관이 함께 참조할 령문을 다시 묶어서 만

들었을 것이고, 정내사군이처석관공령은 여기에 정위가 정리한 사법 관련령집을 추가로 참조할 필요 때문에 다시 편찬되었다. 한편 현관전령·사사공공령·식관공령·급공령·속령·친리령·포도적령·복축작급타사령·사식령 등은 역시 군이나 내사 단위에서 주제별로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령집 대부분이 정위를 비롯해 군이천석관, 내사라는 것은 령의 정비가 그 명령을 처리해야 할 각급 관서였음을 말해 주지만, 수호지진간 「어서」에서 “성왕(聖王)이 율령을 제정하고 군대수가 그 율령을 정비한다”고 했던 것은<sup>103</sup>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주요 근거가 된다. 황제의 명령으로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추가되는 령을 정리해야 했던 것은 그 명령을 처리해야 할 정위 혹은 군급 단위의 각급 관서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찬된 령집이 최종 행정단위인 현의 실무 담당 관원에게 배포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현의 관원은 군으로부터 전달된 령집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령집은 오랫동안 집적된 령문은 비록 이미 생략과 결합, 그리고 령집의 편찬이라는 정비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그 양이 대단히 많았을 터이고 주로 군 단위에서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도관의 실무와 상관이 없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령집이 추가로 합쳐지기도 하면서 여러 령집 사이에 똑같은 령문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 관리들은 하달 받은 령집 중에서 자기의 필요에 맞춰 다시 령문을 발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악록진간 율령이나 호가초장 한술에는<sup>104</sup> 여러 령집명이 인용되는 반면 이년율령이나 장가산336호 한술에는 진관령이나 공령과 같이 특정 령만 인용되는 것도 이러한 발취 과정을 보여 주지만, 이들

103 『수호지진간』 「語書」 “是以聖王作爲法度，以矯端民心，去其邪避(僻)，除其惡俗。法律未足，民多詐巧，故後有間令下者。…故騰爲是而脩法律令·田令及爲間私而下之，令吏明布，令吏民皆明智(知)之，毋巨(距)於罪。”

104 『호가초장』 「令目」 簡2364, 2361, 2047 “令甲, 令乙, 令丙, 令丁, 令戊, 壹行令, 少府令, 功令, 蠻夷卒令, 衛官令, 市事令 · 凡十一章.”

령문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이어지지 않고 드문드문 있는 것도 그 발췌 과정이 매우 편의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각 관원이 필요한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간독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동일하지 않았다. 다만 해마다 추가되는 령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에서는 매년 군에서 정비되는 령집을 확인하는 교수 절차가 필요했다.

정리하면, 진한시기 황제의 명령은 령으로 제정된 후 실무 기관으로 전달되어 기존 율에 우선하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령을 하달 받은 실무 관서에서는 생략과 결합, 그리고 령집의 편찬이라는 정비 작업을 담당했다. 다만 그 작업은 각 관서의 업무 필요라는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비 과정은 임의적이었고 분류 주체와 기준도 다양했다. 이런 상태의 령을 수령해야 해서 실질적인 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현에서는 다시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발췌하여 사용했다. 현재 간독에서 보는 령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진한시기 령은 다시 율로 정비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그 율은 다시 령에 의해 수정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특징을 갖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율이 하나의 법전으로서 고정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 부분은 차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문헌사료

- 『史記』
- 『晉書』
- 『漢書』
- 『後漢書』

### 출토사료

- 謝桂華·李均明·朱國焯(1987), 『居延漢簡釋文合校』, 北京: 文物出版社.

- 陳松長 主編(2015), 『岳麓書院藏秦簡(肆)』,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17),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20), 『嶽麓書院藏秦簡(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22), 『嶽麓書院藏秦簡(柒)』,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彭浩 等 主編(2008),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陳偉 主編(2014), 『秦簡牘合集1卷(上): 睡虎地秦墓簡牘』,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陳偉 主編(2018), 何有祖·魯家亮·凡國棟 撰著, 『里耶秦簡校釋(第二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荊州博物館 編(2021),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選粹』, 北京: 文物出版社.
- 荊州博物館 編(2022),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北京: 文物出版社.

## 논저

- 김병준(2018), 「표지로서의 허사: 秦漢시기 법률 속 ‘及’의 어법적 기능」, 『중국고중세사 연구』 48.
- 김병준(2006), 「중국고대 간독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 방윤미(2021), 「〈陳偉, 秦漢 簡牘에 보이는 律典 체계〉 해제」, 『동아문화』 58.
- 임중혁(2012a), 「秦제국의 승과 그 편제 원칙」,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경인문화사.
- 임중혁(2012b), 「嶽麓書院藏秦簡의 卒승」,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경인문화사.
- 임중혁(2012c), 「漢令의 편제와 종류」,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경인문화사.
- 陳偉(2021), 방윤미 역, 「秦漢 簡牘에 보이는 律典 체계」, 『동아문화』 58.
- 陶磊(2018), 「讀〈岳麓書院藏秦簡〉(五)劄記」, 簡帛網 2018.7.1.
- 李均明·劉軍(1993), 「武威旱灘坡出土漢簡考述—兼論“挈令”」, 『文物』 1993-10.
- 游逸飛(2021), 『製造「地方政府」』,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 陳夢家(1980), 「西漢施行詔書目錄」, 『漢簡綴述』, 中華書局.
- 張忠煒(2012), 『秦漢律令法系研究初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陳松長(2017), 「岳麓秦簡中的令文格式初論」,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6.
- 陳松長(2016), 「岳麓秦簡中的幾個令名小識」, 『文物』 2016-12.
- 陳偉(2018), 「〈岳麓書院藏秦簡(五)〉校讀(續)」, 簡帛網 2018.3.10.
- 廣瀨薰雄(2010), 『秦漢律令研究』, 東京: 汲古書院.
- 宮宅潔(2023), 「廷內史郡二千石共令」, 宮宅潔 編,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註』, 京都: 汲古書院.
- 大庭脩(1919), 『秦漢法制史研究』, 創文社.
- 富谷至(2000), 「晉秦始律令への道: 第一部 秦漢の律と令」, 『東方學報』 72.

中文摘要

## 秦漢時期詔令的頒布以及令之修訂

金秉駿\*

Enactment of Emperor Edict and  
Its Arrangement as an Ordinance  
in Qin and Han Period

Kim, Byung-joon\*

秦漢時期，令作為“當今”皇帝“正確”的命令，具有優先於律的性質。這些令未能以法典的形式成立，而是傳達給了負責行政和司法的事務官員。他們需要系統地掌握新令的頒布及其變更情況。為了理解這一系列過程，本文利用出土的簡牘資料，對秦漢時期的令頒布到地方行政單位、並下達給吏民以後如何得到整理並被官更加以利用的過程進行了考察。

皇帝的詔令是由非常長的句子構成的。雖然詔令得以傳達到地方施行，但在不斷累計的過程中保管和參考詔令是很不方便的。因此官吏會對詔令進行縮減，只留下其核心內容而省略一些形式上的要素。只是這一標準並不固定。有時會留下最初上奏令之必要性的內容，有時則會留下中央政府的業務負責人所討論的內容，抑或是丞相御史向皇帝請願或皇帝許可的部分。也就是說，並非由某個特定官署全程統一地對詔令進行縮略。儘管詔令得到了縮減，但皇帝的命令還是不斷地被頒布和下達，因而這些詔令也會不斷累積。有時會製作新的律令，但也會對原有的律令進行修改和補充。這一過程中難免會產生大量包含類似句子的令文。這種問題在用“及”字組合令文之後得以解決。但

---

\* 首爾大學 歷史學部 教授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這種結合也不具有一貫性，偶爾會造成不完整的結合。在經過這樣的縮略和結合之後，爲了實際使用更爲方便，官吏應該會對令文進行分類並將其編纂成令集。令文會按照時間、負責業務、官署、地區等類別進行分類和彙編。但這一標準同樣也是臨時性的。雖然會按照時間的先後順序進行排列，但也會出現隨意混合的情況。即便說是按照主題彙編的，也會出現用不同於以往的新標準重新編輯的情況。在按照不同官署進行彙編時，也會有時匯集需要同一官署的令文，有時匯集同時需要幾個官署的令文，抑或是改變幾個官署組合再加以匯集。按地區進行彙編的情況也有，但通常會和按主題或官署彙編的情況想重複。因此，在嶽麓秦簡中，可以看到同一令文的反復出現。

筆者認爲，之所以會發生這種現象，是因為這不是中央統一整理後下達給地方的系統性法典。也就是說，令的省略、組合和分類並沒有在中央統一進行，而是接到令的下級單位爲了方便而進行的。嶽麓秦簡中的郡卒令或尉郡卒令由郡彙編，內史官公令、內史戶曹令、內史倉曹令和內史旁金布令由內史按官署彙編，廷卒令則由中央的廷尉來分類令文並彙編成令集的。除此之外，內史郡二千石官共令或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是由同級行政單位的郡廷、內史、郡二千石官共同對要參照的令文再彙編形成的。再者，縣官田令、四司空共令、食官共令、給共令、贖令、遷吏令、捕盜賊令、卜祝酌及它祠令以及辭式令等也被推定是由郡或內史按照主題編纂的。如此，到目前爲止確認的大部分令集是廷尉等郡二千石官和內史發佈的，這說明令的整備是由需要處理各級命令的下級官署進行的。但睡虎地秦簡《語書》中說“聖王制作律令，郡太守修正其律令”，這也成爲支持這一事實的主要依據。皇帝的命令需要不斷地頒布和補充，而做這些的是需要處理該命令的廷尉或郡級單位的各級官署。

最後，簡單介紹一下這樣編纂的令集分發給縣里負責實務的官員這一最末端行政單位後的情況。縣里官員會根據從郡獲得的令集來執行自己的工作。不過即便說他們收到的令集已經經過了令文的長期積累、省略、組合以及令集的編纂等修訂過程，這些令文的數量可能還是非常多，並且由於這種修改是以郡爲單位進行的，所以可能也存在許多與縣道官的實務無關的令文。令

集在補充合併的同時，也會產生與原本的令集重複的情況。因此筆者認為，實務官員們不得不在下達的令集中按照自己的需要重新摘錄令文。嶽麓秦簡律令或胡家草場漢律中引用了多個令集名，而二年律令或張家山336號漢律中只引用了津關令或功令等特定令，這也說明了這樣的摘錄過程。但是這些令文後面的數字沒有連續編號，而是零零散散地出現，這說明摘錄的過程非常隨便。由於各官員所需要的部分不同，在簡牘中確認的內容也不盡相同。但是爲了確認每年新增令的內容，縣里需要教授程序來確認每年郡中修正的令集。

總之，秦漢時期皇帝的命令制定爲令以後，會被傳達到實務機關，其擁有優先於現有律的法令效力。接到令的實務官署負責令文的省略、組合以及令集的編纂等修訂工作。但是，由於該工作是根據各官府의 實務需要這一標準進行的，因此其修訂過程是任意的，分類主題和標準也很多樣。縣要領取這種形態的令，並負責實際令的執行，因此其又要根據自身需要重新摘錄令文來使用。現在簡牘中所看到的令就屬於這一階段。

秦漢時期，令會重新修正爲律，律又由令再次修改，但最終會進入一個律作爲一部法典固定下來的階段。這一部分將在次稿中說明。

**關鍵詞** 秦漢, 律, 令, 簡牘, 詔書

